

통대 92-8-41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3 卷

1991. 4. 1~1992. 6. 30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차 례

| | |
|-------------|-----|
| 1991년 | 3 |
| 4월 | 4 |
| 5월 | 10 |
| 6월 | 12 |
| 7월 | 18 |
| 8월 | 38 |
| 9월 | 48 |
| 10월 | 52 |
| 11월 | 64 |
| 12월 | 72 |
| 1992년 | 87 |
| 1월 | 88 |
| 2월 | 94 |
| 3월 | 106 |
| 4월 | 122 |
| 5월 | 140 |
| 6월 | 170 |
| 事項索引 | 197 |

1991年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4. 2.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對北電通文</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5월 초순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千萬離散家族 전체의 불행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폭넓게 풀어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赤十字本會談 의제 5개항 사업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단된 赤十字本會談부터 하루 빨리 열어야 함.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는 雙方間에 이미 장소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합의되어 있어 날짜만 다시 잡으면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平壤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5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제외함 | | |
| <p>1991. 4. 8. 盧在鳳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貴側은 지난 2. 18. 남북고위급회담북측대표단 聲明을 통해 걸프사태와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구실로 삼아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 4차 회담은 合意한 대로 개최되지 못 하였음. ○ 오늘날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南北當局間에 시급히 착수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형편을 고려할 때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더 이상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는 것임. ○ 나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5. 22.~5. 25. 사이에 가질 것을 제외함.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4. 2.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부위원장 전금철,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베를린 3者會談 參加者 裁判에 證人 希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 방송보도를 통하여 조용술 목사를 비롯한 베를린 3자 회담에 참가한 인사들에 대한 제 3차 공판에서 서울刑事地方法院이 辯護人側의 신청에 따라 베를린 3자회담에 北側代表로 참가하였던 本人을 證人으로 採擇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본인을 증인으로 正式 採擇한 만큼 나는 다음 재판 때 조용술 목사 등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에 대한 필요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 나가겠다는 것을 通知하는 바임. ○ 서울에 나갈 때에는 10명 정도의 전문관계일꾼들과 취재기자들이 본인과 동행하게될 것임을 사전에 알리면서, 우리 일행에 대한 身邊安全과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 <p>1991. 4. 8.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부위원장 전금철,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베를린 3者會談 參加者 裁判 證言에 必要措置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의 無罪를 證言하기 위해 이미 서울에 가기로 결심한 條件에서 여기에 必要한 措置를 즉시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임. ○ 다음번 제 4차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에 대한 귀측 檢察機關의 起訴內容을 판문점을 통하여 빨리 보내주며, 그들의 辯護를 擔當하고 있는 辯護人團을 판문점에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 <p>1991. 4. 10.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부위원장 안병수, 기자회견</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再開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對話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北南當局間 對話와 民間級 統一對話의 並行推進 둘째, 북남간 非政治的 分野의 協力交流와 政治分野의 協力交流 並進 셋째, 북과 남의 당국자, 政黨·團體 代表들이 참가하는 民族統一 政治協商會議 召集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4. 12. ‘全大協’ 기자회견</p> | <p style="text-align: center;">國土巡禮大行進 및 青年學生統一大祝典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5에 서울에서 열릴 汎民族大會에 앞서 8. 3.~8. 10. 간 남북 해외청년학생들이 참가하는 ‘國土巡禮大行進’과 8. 14. ‘青年學生統一大祝典’을 개최할 것을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 제안함. ○ 이를 위해 4. 16. 오후 2시 판문점에서 ‘全大協’ 대표가 축전준비 |

| | 北 韓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4. 11.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원동구, 대남서신 * 방송공개</p> | <p>넷째, 북남고위급회담의 再開를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의 反對話的이며 反統一의인 立場變化가 前提되어야 함.</p> <p>그러한 태도변화 표시로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不可侵宣言 채택문제 ②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雙方이 合意할 때까지 協議를 계속하는 문제 ③ 방북구속자 및 統一活動家들의 釋放問題 ④ 민간급 통일대화의 길을 여는 문제 ⑤ 國家保安法 撤廢問題 ⑥ 汎民聯南側本部의 결성을 위한 활동 허용문제 등에 대해 肯定的인 措置를 취해야 함. <p>○ 對話相對方으로서의 남조선당국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바, 內部的으로 不信과 葛藤으로 전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현정권은 이제라도 圓合과 統一에 이바지 할 轉換的인 조치를 취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勞働者代表 接觸 提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노동자들의 불행한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면서, 끊어진 北南勞働者들의 형제적 유대를 잇고 階級的 團結을 도모하며 통일 조국의 내일을 함께 개척해 나가려는 염원에서 머지않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될 5·1절 기념행사에 남조선의 '全勞協'과 '勞總' 대표들을 정중히 초청하는 바임. ○ 남조선 노동자 대표들의 平壤訪問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北南勞働者代表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4. 16. ‘全大協’기자회견 (漢陽大 總學生 會)</p> | <p>를 위한 편지를 조선학생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며, 7. 7.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함.</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海外青年學生統一大祝典 開催 提議</p> <p>○ 오는 8. 14.~8. 15. 이틀 동안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과 함께 平和統一方案 協議와 조국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서울에서 열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한 實務會談을 1991. 7. 7.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
| <p>1991. 4. 30. 金宇中 대한축구 협회 회장,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축구단일팀 서울평가전 합의일정대로 시행 촉구</p> <p>○ 코리아축구단일팀 선발을 위한 제 1차 評價戰 일정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귀축이 체육행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을 들어 쌍방간에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p> <p>○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은 서로 지켜야하며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단일팀 구성을 위한 평가전은 합의된 일정대로 마땅히 치러져야 함.</p> <p>* 1991. 5. 1. 쌍방 連絡官接觸(판문점)에서 서울평가전을 5. 4.~5. 8. 평양평가전을 5. 8.~5. 12.에 개최기로 합의</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4. 20.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박수동, 대남서신 * 방송공개</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農民代表 接觸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와 남조선의 全國農民會總聯盟 사이에 대표 접촉을 시급히 가질 것을 귀하(* '全農' 會長)에게 다시금 정중히 제의함. ○ 쌍방 단체 대표들의 접촉에서는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를 摸索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北南 農民들 사이의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를 虛心坦懷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들의 접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接觸場所는 귀측에 일임 하려고 함. |
| <p>1991. 4. 30. 北韓蹴球協會 委員長 최룡해, 대남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蹴球單一팀 서울評價戰 延期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5. 4. 서울에서 제 6차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대회에 출전할 코리아축구唯一팀 선수선발을 위한 제 1차 평가전이 진행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평가전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에 明知大 學生이 거리에서 打殺당하는 참사가 발생함으로, 제 1차 평가전 장소로 되어 있는 서울의 분위기는 나날이 예측할 수 없는 不安한 狀況으로 번져가고 있음. ○ 현재 서울에 떠돌고 있는 공기가 蹴球評價戰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간주하면서 이미 쌍방이 합의한대로 오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5. 10.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 2.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늦어도 5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귀측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회답도 보내오지 않고 있음. ○ 귀측이 진실로 人道的 問題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平壤에서 개최키로한 쌍방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촉인 귀측이 회답 날짜를 이달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잡아 우리측에 알려주기 바람.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5. 6. 조선학생위원회, '全大協'에 서신 * 베를린 경유 東亞日報社에 팩 시밀리 電送</p> | <p>는 5. 8.에 평양에서 평가전을 먼저하고, 희생된 학생의 葬禮式이 끝난 다음 서울에서 평가전을 하도록 日程을 調節할 것을 提議하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 統一大祝典 開催關聯 實務接觸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8. 14.~8. 15. 統一大祝典을 진행하기 위해 實務的 會談을 갖자는 提議에 찬동함. - 오는 7. 7. 오전 10시, 조선학생위원회 대표들을 판문점에 파견 하겠음. - 實務會談에서는 統一大祝典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과 함께 북 남대학생들 사이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들도 협의해야 할 것임. |
| <p>1991. 5. 27. 外交部 聲明</p> |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가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單獨으로 加入하겠다고 하는 條件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全朝鮮民族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偏見的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兪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袖手傍觀할 수 없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南朝鮮 當局者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現단계에서 유엔에 |

■ 1991年 5月

| 南 | | 韓 | |
|-----|---|---|-----|
| 出 處 | 提 | 議 | 內 容 |
| |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5. 27. 교육문화일꾼 직 업동맹위원장 최 금순, 대남서신 * 방송공개</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 관련 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수 없게 됐으며 해당한 절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正式으로 유엔加入申請書를 提出할 것임. ○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造成된 情勢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임. |
| <p>1991. 5. 29. 정치인·학자· 언론인 토론회, 남조선의 정치인 ·학자·언론인 들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 방송공개</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政治人·學者·言論人 討論會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北南 政治人·學者·言論人만이라도 먼저 마주 앉아 통일방도를 모색하고 뜻을 합치면 統一偉業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서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北南 政治人·學者·言論人들의 大討論會를 진행할 것을 정중히 제의함. ○ 토론회 장소는 평양이나 서울이 적합하다고 보나, 南의 政治人·學者·言論인들이 평양에 오기가 힘들거나 서울 개최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까운 3국을 택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 ○ 參加 人員數는 北南에서 各各 50名 정도로 하되 관심이 있는 海外 同胞들도 참가하면 좋을 것이며, 정치인·학자·언론인들의 참가 비율은 각기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임. |
| <p>1991. 6. 1. 金日成, 일본 교 토통신사 사장</p> |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加入 決定은 南北單一議席 加入不可 條件의 對應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對話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方途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광범한 統一力量과 보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6. 19. 金宇中 대한축구 협회 회장,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축구팀 平壤解團式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p> <p>○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축구단일팀의 평양해단식 문제와 관련하여 同解團式에 참가할 우리측 인원들의 규모, 滯留日程을 포함한 제반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1. 6. 21.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6. 27. 統一院 代辯人 論評</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조속한 재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 8.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촉구한데 대해 아무런 회답조차 보내오지 않은 북한이 이 제와서 돌연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온 겨레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린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남북고위급회담은 처음부터 그 개최에 조건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건도 會談中斷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 ○ 회담의 재개를 위한 장애물은 북한측이 말하듯 우리의 대화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대화상대방을 打倒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측의 敵對的 자세에 있음. ○ 북한측은 더 이상 적대적 자세를 지양하고 남북의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 대화에 지체없이 呼應해 나옴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7천만 온 겨레의 共同繁榮을 추구하고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 |

| 北 | | 韓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1991. 6. 26.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대변 인 안병수 담화</p> | <p>만약 일부 절차문제들을 구체화할 것이 있으면 포르투갈에 가 있는 코리아축구선수단에서 협의하면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再開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의 최고당국자가 統一關係長官會議에서 統一獨逸의 吸收統一方式을 연구하고 그러한 統一에 對備할 것을 지시한 事實은 言語道斷임. ○ 吸收統一·勝共統一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도 통일을 위한 그 어떤 合意도 排除하는 극히 挑發的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南朝鮮 當局者들이 끝내 이 길로 나가려 한다면 그들은 고위급회담이 영영 파탄되고 統一問題 해결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全的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勝共統一 野望을 버리고 聯邦制統一의 길에 응해야 하며, 이러한 立場轉換은 反共國是와 國家保安法 撤廢, 訪北人士 및 民主人士 釋放,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 중지 등에서 표시되어야 할 것임. |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6. 韓國大學教育協 議會(회장 朴 煥植 연세대 총 장) 발표</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教授·學生 交流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의 念願인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후 남북한간의 文化的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남북한 학생·교수·總學長들의 상호교류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 대학 총학장들의 상호 초청·방문 및 남북한 학자들간의 人的·學術的 교류를 제의함. ○ 남북한 대학교류 방안에는 양쪽 대학 총학장의 相互訪問과 학술세미나 개최, 文獻交流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1991. 6. 29~30. 제 2차 범민족대 회 준비를 위한 회의(베를린) | 제 2차 汎民族大會 準備를 위한 제 1차 준비회의 개최 ○ 제 2차 汎民族大會 開催 決定 - 명칭 : 조국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제 2차 범민족대회 - 장소 : 서울 - 기간 : 1991. 8. 12.~8. 18. - 參加規模 : 北側과 해외에서 각각 대표 300명, 參觀人 700명 - 행사내용 : 토론회, 文化祭, 青年學生統一大祝典, 統一大行進 등 - 제 2차 준비회의 : 1991. 7. 18. 서울 | | |
| 1991. 7. 2. 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발표 | 全大協 초청 관련 판문점 南北學生會談 북측대표단 명단발표 ○ '8·15 北南海外學生大祝祭'와 관련한 7. 7. 판문점 북남학생대표 단간의 실무회담에 북측대표단을 예정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음. 대표단 명단 · 首席代表 : 리금철(남, 조선학생위원회 위원) · 代 表 : 계봉일(남, 조선학생위원회 위원), 박은숙(여, 조선 학생위원회 위원) | | |
| 1991. 7. 3.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 대남서신 * 방송공개 | 8·15 統一大祝典 및 7. 7. 板門店 學生會談 實現保障 要請 ○ 귀하(尹亨燮 教育部 長官)가 새세대들의 教育을 책임진 當局者로 서뿐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8·15 북남 해외청년학생 통일대 축전과 7. 7. 판문점 실무회담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必要한 條件을 保障하여줄 것을 要請하는 바임. | |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7. 도덕성 회복과 민족대화합을 위 한 시국선언 대 회</p> |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한 元老會談 제의</p> <p>○ 金壽煥 주기경,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 朴忠勳·劉彰順·金貞烈 前國務總理, 高興門 전국회부의장 등 각계원로 31명은 ‘도덕성회복 과 민족대화합을 위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남북원로들이 정기적 으로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논의할 常設機構를 설치하자고 제안.</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10.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발표</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 2차 準備會議 대표단 명단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진행되는 '91汎民族大會 제 2차 準備會議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표단을 구성하였음. <li style="text-align: center;">대표단 명단 · 團長 : 전금철(범민련북측본부 부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 代表 : 손종철(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위원,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 조상호(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위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 김선옥(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위원, 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 정덕기(범민련북측본부 중앙위원, 조평통 서기국 부장) |
| <p>1991. 7. 10.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의장 윤기복,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 2차 準備會議 北側代表團 結成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6. 29.~6. 30. 베를린에서 진행된 汎民族大會 제 1차 準備委員會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 2차 범민족대회'를 오는 8. 12.~8. 18. 서울에서 진행하며 이를 위해 제 2차 準備會議을 7. 18.부터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음. ○ 범민련 북측본부 전금철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10명의 取材記者들이 7. 17.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과하여 귀측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명단을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귀측에 넘겨주며, 이 기회에 귀측 該當機關이 신변안전담보문건을 우리측에 넘겨줄 것을 희망함. |
| <p>1991. 7. 10. 조국통일범민족</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 2차 準備會議 保障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차 범민족대회 베를린준비회의 합의정신에 따라 제 2차 범민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7. 11. 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準備會議 참가 불허</p> <p>○ 나는 統一院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전통문을 보내니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바 ‘汎民聯南側本部結成準備委員會’는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단체로서 이러한 단체가 주관하는 남북행사는 허가할 수 없음. - 남북간의 공동행사는 상대방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집회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 - 북측이 거론하는 행사가 8·15 광복절 경축행사라면, 올해 광복절을 민족의 慶祝行事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발표(7. 15.)가 있을 예정이므로, 발표 이후 남북간의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p>1991. 7. 12. 盧泰愚 大統領,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제 5기 출범회의 개최사</p> | <p style="text-align: center;">光復節 慶祝行事 共同開催 및 TV·라디오 방송 相互交流·開放提議</p> <p>○ 남과 북은 한겨레로서 민족적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8·15를 기하여 남북의 동포와 젊은이들이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 | |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연합북측본부 의 장 윤기복, 담화</p> | <p>족대회 참가를 위해 300명의 대표단과 700명의 참관단을 오는 8. 13.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내 보낼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聯北側本部는 수천명의 방청인들의 참가하에 8. 5. 백두산에서 祖國平和와 統一을 위한 백두-한라대행진을 진행하여 8. 12.에 판문점에 도착할 것임. ○ 북측본부는 統一文化祭를 비롯한 대회기간에 진행할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의 행사들을 광범히 준비하여 그것을 통하여 통일대축제의 분위기를 높혀 나갈 것임. ○ 南朝鮮 當局은 오는 7. 1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91 서울범민 족대회 제 2차 준비회의에 북측과 해외측 대표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임. | | |
| <p>1991. 7. 11. 정무원 총리 연 형묵, 대남전통 문</p> | <p>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開催提議</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오는 8. 27.부터 평양에서 제 4차 北南高位級會談을 가질 것을 提議하는 바임. ○ 나는 귀측이 평양에서 相逢과 會談의 成果를 위하여 지난해 제 3차 회담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제 4차 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든 訪北人士들을 釋放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는 바임. | | |
| <p>1991. 7. 12.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북측본부 의 장 윤기복, 대남 전통문</p> | <p>汎民聯北側本部 代表團 7. 17. 板門店 派遣通報</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진실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지난해에 承認한 문제를 올해에는 承認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보다 前進的인 자세에서 우리측 대표들이 7. 18. '제 2차 汎民族大會를 위한 서울준비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7. 13.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에서 共同慶祝行事 및 統一文化祝典 개최 · 白頭山에서 漢拏山까지 統一大行進 실시 · 남북의 각계 대표들 서울·평양에서 統一大討論會 개최 - 남북 學者·전문가가 民族文化遺産을 공동으로 調査·研究하고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民族文化共同委員會' 구성 ○ 남과 북은 서로에게 절실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나이든 이산가족부터 고향방문 및 血肉相逢 주선 -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우선 상호교류 및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방식 문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공동전환시설 설치·운영 ○ 남북한간에 政治·軍事的 대결을 止揚하고 韓半島에 긴장의 시대를 종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함. -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國際社會에서 남북이 한반도와 國際的 문제에 協調·協力 -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實效性 있는 불가침 선언 채택 및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 새로운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하며 관련 국가들도 필요한 협조와 共同努力 확인·보장 | | |
| <p>1991. 7. 13. '汎民聯' 남측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개최 日字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그동안 중단시켜 왔던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뒤늦게나마 호응해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기로 되어있는 만큼 귀측이 오는 8. 27. 南北高位級會談을 開催하자는 提議에 대해 同意하는 바임. ○ 실무적 사전준비를 위해 쌍방 책임연락관접촉을 오는 7. 19.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회'이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 2차 준비회의 일자 연기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7. 18.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범민족대회 2차 실무회담을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열어놓는 응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p> <p>○ 나는 우리측 대표단이 예정대로 서울에 나가기 위하여 오는 7. 17. 오전 10시 판문점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再三 통지함.</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14. 민족통일 정치협 상회의 북측준비 위원장 박성철, 담화</p> |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統一 政治協商會議 召集을 위한 實務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에서 우리의 高麗聯邦制 방안과 함께 남조선 당국이 내놓은 통일방도도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며 남조선의 다른 政黨들과 團體들, 個別的 人士들이 내놓은 제안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見地에서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 및 이를 성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991. 8. 15. - 장 소 : 서울 또는 평양 - 참가범위 : 雙方 當局과 政黨·團體들에서 각기 5명 정도로 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 내외의 대표 - 실무회의 :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 대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개최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16. 정부 발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행진’ 추진을 위한 實務會談 開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1991. 7. 26. ~ 7. 30. - 장소 : 판문점 - 대표단 구성 : 남북 각기 5~7명의 실무대표 ○ 금년 추석(9. 22.)을 기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실현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大交流’ 선언에 따른 방북신청자중 최소한 70세 이상 高齡의 이산가족들만이라도 自由往來 방법으로 고향방문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 : 鄭元植 국무총리 · 次席代表 : 金宗輝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 · 代 表 : 宋膺燮(합참본부 제 1 차장), 宋漢虎(통일원 차관), 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 林東源(외교안보연구원 원장), 李東靛(대변인, 국무총리 특보) |
| <p>1991. 7. 17. 統一院 代辯人 論評</p> |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의 8·15 공동축제 개최 관련, 실무회의 제의 留意檢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16. 북한측의 ‘祖平統’부위원장의 담화 내용 속에 이번 행사와 관련, 구속자 석방 주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북한측이 8·15를 기념하는 共同祝祭를 개최할 것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7. 16.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부위원장 윤기복, 담화</p> |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拒否, 서울 汎民族大會 開催保障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를 계기로 일련의 共同祝祭를 民間行事로 하자는 남조선 당국의 제의가 제 2차 汎民族大會를 위한 베를린준비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肯定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汎民族大會와 청년학생들의 통일대축전에 남조선 범민련관계 단체들 이외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광범히 참가시킬 것을 제의함. ○ 8·15를 계기로한 共同祝祭의 開催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해외측 준비회의를 7. 25. 서울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함. - 대표단은 북과 남 해외의 범민족대회 관계자들과 당국대표들로써 각기 5~7명으로 구성 ○ 남조선 당국은 민간축제 행사와 準備會議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측의 汎民聯과 全大協의 관계자들을 늦어도 준비회의 전까지 모두 석방하고 서울汎民族大會와 청년학생들의 統一大祝典開催를 어김없이 保障할 것을 제의함. ○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제의한 이산가족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남측이 쌍방 赤十字實務代表接觸을 제기하는데 성의있게 나오면 자연히 해결될 것임.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20. 統一院 代辯人 論評</p> | <p>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자고 한 점에 유의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함께 정부는 7. 16. 88개 南北民間交流推進機構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統一大行進’ 지지 결의를한 데 대하여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이같은 각계각층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통일대행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拘束者 위문단 파견제의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임의단체를 내세워 문익환, 임수경에 대한 위문 운운한 것은 우리의 法秩序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문단’ 파견을 同胞愛的이며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강변한데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 북한측이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실정법을 위반한 在所者를 위문하겠다는 것은 남북간에 和解와 協力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 議 | 內 容 |
| <p>1991. 7. 19. 문익환 목사 구 원대책위원회 위 원장 정준기·임 수경 석방투쟁위 원회 위원장 여 연구, 공동명의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 拘束者 慰問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해방 46돌을 계기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을 위문하기 위해 7. 25.~8. 20. 사이에 ‘청소년학생위문단과’과 各界各層을 망라한 위문단을 귀측에 각각 파견하기로 결정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靑少年學生慰問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등 20명 · 7. 25. 서울방문 － 各界各層을 망라한 위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國戰線 女연구 의장등 20명 · 8. 10. 서울방문 － 위문단에 각각 취재기자 10명이 동행 ○ 이와 관련하여 귀측에서 7. 23.까지 身邊安全擔保覺書를 판문점을 통하여 우리측에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交通과 宿食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 | |
| <p>1991. 7. 20.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의장 윤기복,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準備會議 代表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이미 밝힌대로 8·15를 계기로 汎民族大會와 靑年學生統一大祝典 開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는 7. 24. 오전 10시 代表團을 파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리는 바임. 대표단은 이미 통지한 5명의 대표 외에 2명의 當局代表가 더 포함됨. ○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安全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條件을 보장해 줄 것과 동시에 범민족대회 남측 관계자들과 貴當局代表들이 판문점에서 우리 대표단을 마중해줄 것을 바람.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7. 20. 金和植 통일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準備會議 개최 제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7. 16. 88개 南北民間交流推進機構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통일대행진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결의하고 ‘行事準備委員會’를 조직키로한 데 이어 7. 19. ‘통일대행진행사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發足하였음. ○ 우리측 ‘행사준비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민간교류추진기구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各界各層을 망라한 汎國民的 조직으로 結成되었음. ○ 나는 오는 7. 26.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준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준비회의 대표단은 남북 쌍방 각기 당국대표와 민간대표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함. ○ 준비회의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首席代表 : 한양수(민족통일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代 表 : 조동영(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정석홍(통일원 자문위원), 김금래(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장훈(남북대학교교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박석균(통일대행진행사준비위원회 대변인), 서영교(통일대행진행사준비위원회 기획부장)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22.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대변인 성명</p> |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準備會議 拒否, 汎民族大會 開催保障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조선 당국은 7. 20. 우리의 제의에 대해선 외면하고 統一大行進 開催問題를 논의하기 위한 7. 26. 준비회의 代表名單을 공개하면서 汎民聯南側本部 結成準備委員會와 全大協代表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음.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온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8·15 범민족대회와 靑年學生 統一大祝典을 무산시켜 버리기 위한 불순한 기도에서 나온 고의적인 妨害策動임. ○ 남조선 당국자들은 統一大行進 提案이라는 것이 서울 범민족대회와 靑年學生통일대축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謀略脚本임을 시인하고, 이미 준비되고 있는 통일잔치를 성과적으로 치르도록 보장하여야 함. ○ 남조선 당국자들은 公安統治의 희생자로 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7. 23. 張忠植 남북체육 회담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오픈탁구대회’와 ‘IOC위원장배 탁구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當面課題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 12. 제 4차 회담이래 탁구와 축구단일팀 참가로 말미암아 지연되어온 제 5차 체육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하겠음. ○ 나는 그간 남북체육회담에서 토의를 진행해온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등 주요 國際競技大會 南北單一팀 구성·참가 문제와 統一蹴球大會 등 南北體育交流·協力問題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제 5차 회담을 오는 8. 6.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 <p>1991. 7. 23. 金昶植 통일대행 진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8·15 慶祝 共同行事推進問題 協議위한 준비회의 호응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祖平統’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 제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준비회의 개최에 不當한 條件들을 제의하였음. ○ 귀측은 귀측이 임의로 정한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겠다고 했을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현될 수도 없는 조건들을 내걸기까지 하였으며 우리측의 各界各層이 망라된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시비한 것은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음. ○ 귀측이 진심으로 8·15 慶祝共同行事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면 이 제라도 준비회의를 7. 26.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呼應해 올 것을 촉구함. |
| <p>1991. 7. 27. 金昶植 통일대행 진 행사준비위원</p> | <p style="text-align: center;">8·15 慶祝 共同行事推進問題 협의 위한 準備會議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에 아무런 회답조차 보내오지 않음으로, 7. 26. 준비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7. 23. 문익환 목사 구 원대책위원회 위 원장 정준기·임 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 장 여연구, 공동 명의 대남전통문</p> | <p>남조선의 모든 汎民聯 關係人士들과 전대협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 하며 國家保安法을 撤廢하고 統一民主 勢力에 대한 팻소적 탄압을 중지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방북구속자 위문단파견 통보</p> <p>○ 우리는 이미 귀측에 통보한 대로 임수경 학생 청년학생 위문단을 7. 25. 오전 10시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에 내 보낼 것임.</p> |
| <p>1991. 7. 27.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p> | <p style="text-align: center;">구속자위문단 재차 파견통보</p> <p>○ 우리 청소년위문단은 지난 7. 25. 임수경 학생, 문익환 목사를 찾 아가 위문하려 했으나 귀측은 이날 당치않은 구실을 들어 끝내 우</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회 위원장, 대북 전통문</p> | <p>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이번 행사를 '民族의 大祝典'으로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상대측의 特定團體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준비회의 개최에 前提條件을 붙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나는 준비회의를 오는 7. 30.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함.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8. 1.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實務代表接觸 대표명단 통보 ○ 1991. 8. 5.부터 개최되는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림. - 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p>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7. 31.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장 김형진, 대남전통문</p> | <p>도가 비핵지대로 합의, 宣布되는 此際로 그 地位를 法的으로 담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非核國家들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 地位를 尊重해야 함. 공화국 정부는 朝鮮半島에 非核地帶를 창설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雙務的 또는 多務的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 | | |
| <p>1991. 7. 31. 조선교육문화일꾼 직업동맹 위원장 최금순, 대남편지 *방송공개</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開催 日字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체육회담이 진정으로 民族的 團合과 統一에 이바지하는 회담으로 되고, 좋은 결실을 마련하자면 남조선에서 시급히 統一民族 勢力을 탄압하는 反統一行爲가 중지되고 우리 회담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제 5차 北南體育會談을 '8·15 汎民族大會' 이후 8. 17. 오전 10시 판문점 '統一閣'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教育者大會 豫備會談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의 거듭되는 방해로 8·15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개최하기 위한 북남대표들의 실무 접촉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 북남 교육자들이 서로 마주 앉지도 못하고 束手無策으로 지낼 수 없으며 겨레 앞에 다진 崇高한 統一意志를 실현하기위해 貴 團體(*全教組)가 발기한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기어이 성사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함. ○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開催를 위한 豫備會談을 오는 8월 초순에 가질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며 豫備會談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귀측이 정하는 데 따르려고 함. | | |
| <p>1991. 8. 1. 문익환 목사 구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준기·임</p> |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拘束者 慰問團 派遣關聯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우리 靑少年學生慰問團의 판문점 통과를 거부한데 대하여 다시금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는 8. 10.에 나가게 될 우리의 各界層慰問團의 판문점 통과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8. 1. 외무부 대변인 성명</p> | <p style="text-align: center;">표)</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核·軍事問題論議 用意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벽한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핵확산 방지 문제를 포함한 군사 및 제반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 |
| <p>1991. 8. 2. 金昶植 통일대행 진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8·15 경축행사 준비회의 개최일시·장소 北側에 一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축이 8·15를 전후하여 일부 特定團體가 企圖하는 偏向된 정치 집회와 '통일대행진' 행사를 결부 시킴으로써 同族間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을 취해온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임. ○ 남북간의 人的往來와 교류는 相互不信을 해소하고 민족적 유대를 잇는 지름길이며, 統一大業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임. 이와같은 見地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통일대행진과 같은 행사야말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는 8. 10. 이전에 준비회의 席上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준비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귀축에 一任하는 바임. | | |
| <p>1991. 8. 5. 소광희 한民族 哲學者大會長, 對北書翰</p> | <p style="text-align: center;">한民族 哲學者大會 명칭 변경 불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명칭에 관한 제안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한민족 철학자대회'의 '한민족'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主催側의 뜻이 담겨 있음. 이미 이 大會名으로 국내외 세계 각지의 동포 철학자들에게 초청의 말씀과 원고 청탁이 나가 業務가 진행되고 있어오니 주최측의 뜻에 맡겨 주기 바람. ○ 身邊安全保障問題는 우리 해당 기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覺書는 貴側人員이 판문점을 通過할 때 전달될 것이라고 함.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위원장 여연구, 공동명의 대남전통문</p> <p>1991. 8. 2. 정무원 총리 연 형목, 대남전통 문</p> | <p>며, 또한 남조선에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리는 바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하여 8. 7.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實務者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접촉에는 各階層慰問團 성원인 김영남(직총 부위원장), 청소년학생위문단 성원인 계봉일(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을 파견 - 접촉에서는 위문단의 판문점 通過時間, 신변안전보장 문제, 交通, 宿食 등 편의를 보장하여 주는 문제 협의 <p>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準備를 위한 實務代表接觸 代表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北南高位級會談 準備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에 우리측 대표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의 백남준·최우진 대표들이 나가게 됨을 알리는 바임.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8. 5. 제 4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차 실 무대표접촉(관문 점 평화의집)</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와 함께 ‘不可侵 合意書’, ‘3通 合意書’가 함께 마련 되어야 함. ○ 상호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함께 마련 되어야 함. | | |
| <p>1991. 8. 10. 제 4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2차 실 무대표접촉(관문 점 통일각)</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 · ‘不可侵合意書’ · ‘3통 합의서’를 제시하고 쌍방 합의서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 ○ 토의는 ① 쌍방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등을 비교 · 檢討하고 ② 합의문건의 數와 名稱을 결정하며 ③ 합의서의 문안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의 | | |
| <p>1991. 8. 12. 姜英勳 대한적십 자사 총재, 대북 성명</p> | <p>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조속 개최 촉구</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은 大韓赤十字社가 1971. 8. 12. 북한적십자사회에게 ‘남북이산 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南北赤十字會談의 개최를 제의한지 20년이 되는 날 임.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귀 적십자회에 대하여 中斷狀態에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을 하루빨리 재개하는데 조건없이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함. ○ 1985. 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본회담 이후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11차 南北赤十字本會談을 예정대로 평양에서 조속히 개최할 것을 귀 적십자회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임.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8. 5. 제 4차 북남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차 실 무대표접촉(판문 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北南 不可侵에 關한 宣言’과 ‘北南 和 解와 協力·交流에 關한 合意書’를 함께 채택할 것을 주장 ○ ‘조선반도 비핵화에 關한 공동선언’(*7. 30. 외교부 성명) 채택 문제를 제 4차 회담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 |
| <p>1991. 8. 10. 제 4차 북남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2차 실 무대표접촉(판문 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不可侵問題’를 먼저 討議하자고 주장 ○ 合意書 文件의 수와 명칭부터 결정한 후 內容에 대한 討議를 진행 할 것을 제의하고, 雙方 總理間 회담에서는 ‘原則的·方向的·宣言 的’인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실천적인 것은 政治分科委員會와 交流·協力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하자고 主張 |
| <p>1991. 8. 12. 북한올림픽위원 회 위원장 김유 순,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無期延期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이번에 ‘에스파니아’에서 진행된 國際柔術競技에 참가한 우 리 선수를 유혹하여 서울에 끌어다 놓고 그 무슨 망명이니 뭐니하 고 며들고 있음. ○ 귀측의 이러한 처사가 북과 남이 진행하는 體育會談의 趣旨로 보나 唯一팀의 根本精神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민족적 처사로, 우리 공화국 북반부 全體 體育人들에 대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挑發로 된다고 인정하고 體 育會談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간주함. ○ 귀측이 진실로 우리와 體育會談을 하고 唯一팀을 계속할 의사가 있 다면 이번 범행을 솔직히 사죄하고 우리 선수를 무조건 돌려 보낼 것을 촉구하는 바임. ○ 귀측이 우리의 이 응당한 요구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적절한 조 치를 취할 때까지 오는 17일로 예정된 北南體育會談을 부득이 연 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임.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8. 12. 서울지역 大學新聞記者 訪北取材를 위한 남북대 학생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민족대회 행사, 북한대학생들의 生活相과 협동농장, 북한주민생활, 遺蹟地 探訪, 金日成 主席·김일성대 총장과의 인터뷰 등을 취재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바람 ○ 참석대표 : 金琪憲(성균관대신문 편집장), 崔炳燮(전건국대학보사 편집장), 池恩京(한양대학보사 문화부장) |
| <p>1991. 8. 13. 金鍾烈 대한올림픽 위원회위원장, 대북전문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無期延期에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8. 17. 개최하기로 남북간에 합의되어 있는 제 5차 남북체육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회담을 一方的으로 延期 시키려고 하는 귀측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 ○ 귀측이 이제라도 그릇된 주장을 버리고 체육인 本然의 순수한 자세로 돌아와 제 5차 남북체육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태도표시가 있기를 촉구함. |
| <p>1991. 8. 14. 金昶植 통일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聲明</p> |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霧散 유감표명, 向後 民間次元 接觸·交流에 期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우리측은 '統一大行進'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쌍방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虛心坦懷하게 意見을 交換하기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한 '準備會議' 개최에 북한측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8. 12. 조국통일범민족 연합북측본부 의 장 윤기복, 대남 편지 *방송공개</p> |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大學生 無事歸還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당국은 우리를 찾아온 全大協 代表들이 서울로 돌아가면 拘束 處 刑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의 신상에 그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지금 일정에 오른 北南對話의 進展과 앞으로의 북남관계 전반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함. ○ 귀당국이 진실로 북남대화의 進展과 北南關係의 改善을 바란다면 전대협 대표들에 대한 拘束令을 즉시 철회하여야 하며 그들이 서울로 무사히 돌아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必要한 條件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 <p>1991. 8. 12. 서울지역 대학신 문기자 방북취재 를 위한 남북대 학생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지역 大學新聞記者 訪北取材 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族大會 取材를 最優先으로 할 것이며, 取材日程은 現地에서 協議하자고 主張 ○ 取材期間 10일, 取材人員 30명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 ○ 참석대표 : 최경철(김책공대 5), 리하길(조선학생위원회 편집부장), 강용철(김일성종합대학 철학 4) |
| <p>1991. 8. 14. 사회과학원 철학 연구소 소장 김 창원, 대남서한</p> | <p style="text-align: center;">한民族 哲學者大會 開催日字 延期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귀委員會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가 海內외의 廣範한 哲學者들이 모여 우리 민족의 運命開拓과 有關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합인만큼 그에 상응하게 명칭을 '汎民族哲學者大會'로 할 것을 다시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 議 | 內 容 |
| <p>1991. 8. 16. 제 4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차 실 무대표접촉(관문 접 평화의집)</p> | | | <p>이 성의있게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우리측의 제의에 귀를 기울일 대신 8·15를 전후하여 일부 特定不法團體들을 총동하여 편향된 政治集會를 劃策하는데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동족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음. ○ 우리는 비록 8·15가 지난 이후라도 북한측이 온 거래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統一問題 大討論會'와 같은 행사들이 적당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호응함으로써, 남북간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에 隔意없는 활로가 트이기를 기대함.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이 합의할 '不可侵宣言'은 7·4공동성명과 같이 '直言的'이어 서는 안되며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북측 합의서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합의서에 반드시포함되어야 할 10개 항목을 제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新聞·라디오 및 出版物의 상호 개방과 교류 2.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通信往來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추진 3. 남북간 平和體制 구축 4. 서울·평양간 상주대표부 설치 5. 상대방 체제에 대한 破壞·顛覆활동의 중지 6. '불가침'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 7. 현휴전협정의 준수 8. '불가침' 합의서가 쌍방이 이미 체결한 조약·협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없다는 문제 9. 남북간의 通行·通信·通商 및 경제협력의 구체적 실천조치 10. 通行委員會, 通信委員會, 通商 및 經濟協力委員會의 구성·운영 |
| <p>1991. 8. 20. 柳宗夏 제 7차 77그룹 亞洲地域 關係會議 대한민</p> | | | <p style="text-align: center;">77그룹 아주지역각료회의의 대표단 파견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차 77그룹아주지역각료회의가 平壤에서 열리게되는데 대하여 大韓民國 政府代表團을 대표하여 祝賀하며, 이번 平壤關係會議가 앞 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협력관계를 열어가는 귀중한 계기가 되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8. 16. 제 4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차 실 무대표접촉(판문 점 평화의집)</p> | <p>한번 제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體思想과 時代의 變化’에 관한 主題討論에서는 基調報告와 論文發表를 우리측이 전부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分科運營計劃을 調整하여줄 것을 희망함. ○ 대회를 8. 21. 개최하는 것은 우리 北半部 哲學者들의 大會參加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開催日時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면 함. 북반부 철학자들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各界代表들의 앞길을 차단하는 귀측 당국의 不法不當한 처사를 외면하고 서울대회에 나가는 것은 파쇼 세력을 도와 주는 것으로 됨.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담에서는 ‘方向的·原則的’問題를 합의하고 ‘履行的·實踐的’問題는 ‘分科委’에서 논의해야함. ○ 쌍방 합의서안 중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不可侵宣言’과 나머지 합의서안들의 共通點을 묶은 또 하나의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으로 하여 文案整理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대북 전통문</p> | <p>리라고 확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표단과 기자단이 판문점을 通過 往來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 준비위원회측에서 주선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대표단의 규모는 대표 15명과 5명 정도의 記者가 동행할 것임. 우리 대표단의 판문점 통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實務連絡官의 接觸을 희망함. |
| <p>1991. 8. 29. 柳宗夏 제 7 차 77그룹 아주지역 각료회의 대한민 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77그룹 아주지역각료회의 대표단 파견 관련 회답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지난 8. 20. 77그룹 아주지역각료회의에 참가할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및 기자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하는 電話通知文을 발송한 바 있음. ○ 今番 평양회의 개최기일이 가까워 옴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의 회의 參加準備日程을 고려하여 8. 31.까지는 貴側의 立場을 알려주기 바람. |
| <p>1991. 9. 18. 建國大 國語國文 學科 學生代表, 김일성대 어문학 부 學生代表 접 촉(판문점 중감 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北韓地域 學術踏査를 위한 學生代表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10. 8.부터 방북하여 다음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종합대학과 자매결연 - 古代·近代·現代文學發生地인 철산·곽산·정주답사와 방언조사 - 統一討論會, 백두산 통일기원제 등 개최 - 訪北期間: 10. 8.부터 7박 8일 - 訪北團: 204명 ○ 차기 접촉 일시 및 장소: 1991. 9. 24. 중감위원회의실 ○ 접촉대표: 김호상('91학술답사 준비위원장), 신성목(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김미정(국어국문학과 학생), 강미(국어국문학과 학생) |
| <p>1991. 9. 20. 姜英勳 대한적십</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再開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 6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중단된 남북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9. 18. 김일성종합대 조 선어문학부 학생 대표, 건국대 국 어국문학과 학생 대표 접촉(판문 점 중감위의실 실)</p> |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北韓地域 學術踏査를 위한 訪北問題 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답사에 대한 實質問題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검토해 다 음 接觸시 論議할 것을 요구함. ○ 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9. 24. 중감위의실 ○ 접촉대표 : 이택건(김일성대 어문학부 학생, 이하 같음), 엄정철, 김철규, 방금순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자사 총재, 대북 전통문</p> <p>1991. 9. 24. 建國大 國語國文 學科 學生代表, 김일성대 어문학 부 학생대표 2차 접촉(판문점 중 감위회의실)</p> <p>1991. 9. 25.(현 지시간 9. 24.) 盧泰愚 大統領, 제46차 유엔총회 연설</p> | <p>적십자회담을 再開하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北韓地域 學術踏査를 위한 訪北問題 協議</p> <p>○ 合意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北團 構成 : 120명 (학생 110명, 대학원생 6명, 지도교수 4명) - 체류기간 : 10. 8.부터 10. 15.까지(7박 8일) - 방 문 지 : 평양·개성·묘향산·백두산 - 개최행사 : 김일성대와 자매결연, 백두산 統一祈願祭, 김일성대와 共同으로 文化·體育行事, 統一作品 創作方法 討論 - 김일성대 조선어학부 학생 학술답사단 남측방문 : 11. 8.부터 (7박 8일간) - 身邊安全保障覺書 수교 : 10. 5. <p>○ 접촉대표 : 김호상('91학술답사 준비위원장), 신성목(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김미정(국어국문학과 학생), 강미(국어국문학과 학생)</p> <p style="text-align: center;">盧泰愚 大統領 유엔총회연설, 平和統一 3個 實踐方案 提示</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休戰體制的 平和體制로 轉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武力使用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關係를 正常化하는 길로 나가야 함. 2. 軍事的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減縮 推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서로 軍事情報를 交換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9. 24. 김일성종합대 조 선어문학부 학생 대표, 건국대 국 어국문학과 학생 대표 2차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北韓地域 學術踏査를 위한 訪北 問題 協議</p> <p>○ 主要 發言 內容</p> <p>－ 交流 3原則 提示</p> <p>① 自主交流 : 두 대학 학생교류는 제 3 자의 介入과 간섭없이 自 主的으로 해야함.</p> <p>② 統一交流 : 民族和解와 團合,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 이 되어야함.</p> <p>③ 自由交流 : 社會的, 法律的 拘束없이 자유롭게</p> <p>○ 合意事項</p> <p>－ 訪北團 構成 : 120명(학생 110명, 대학원생 6명, 지도교수 4명)</p> <p>－ 체류기간 : 10. 8.부터 10. 15.까지(7박 8일)</p> <p>－ 방 문 지 : 평양·개성·묘향산·백두산</p> <p>－ 개최행사 : 김일성대와 자매결연, 백두산 통일기원제, 김일성대와 공동으로 문화·체육행사, 統一作品 創作方法 토론</p> <p>－ 김일성대 조선어학부 학생 학술답사단 南側訪問 : 11. 8.부터 (7박 8일간)</p> <p>－ 신변안전각서 수교 : 10. 5.</p> <p>○ 접촉대표 : 이택건(김일성대 어문학부 학생, 이하 같음), 엄정철, 김철규, 방금순</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9. 25. 統一院 交流協力 局長, 記者會見</p> | <p>하고, 機動訓練과 部隊移動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常駐監視團을 相互 派遣하는 등 軍事的 不信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擴散條約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함.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信賴構築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戰力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도 南北韓間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 <p>3. 사람과 物資·情報의 자유로운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通行·通信과 通商을 보장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訪北 關聯 會見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靑學聯' 主導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대표와 김일성대 조선어문학부 학생대표간에 합의한 판문점 通過 入北,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 등에 대한 합의는 통일원의 접촉승인시 예상했던 합의와 다르므로 訪北을 承認할 수 없음.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9. 30.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 · 김일성대 학생위 원회 위원장 김 수산, 대남 전통 문</p> |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院 長官에게, 建國大 學生들의 訪北措置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청년학생들이 學術踏査班 交換과 관련한 諸般問題들을 완전히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음. ○ 귀 당국이 모처럼 마련된 北南靑年學生들의 自主交流, 統一交流를 협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막아 나서는 것은 不當한 태도이며 이에 엄중 항의하는 바임. ○ 귀하가 統一問題에 대한 책임있는 當事者로서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訪北踏査를 예정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무조건 취해줄 것을 기대함. |
| <p>1991. 10. 2. (* 현지 시간) 정무원 총리 연</p> | <p style="text-align: center;">연형묵 정무원총리 유엔연설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우리의 社會主義를 고수해 나갈 鐵石같은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음.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10. 14. 金鍾烈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개최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차 남북체육회담이 합의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8개월의 시일이 경과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족의 희망을 깨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 南北單一팀 構成, 참가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서 제 5차 회담 개최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됨. ○ 제 5차 南北體育會談을 오는 11. 5.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 <p>1991.10.22~25.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p> | <p style="text-align: center;">第 4次 南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基調 演說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定着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減縮을 추진, 사람·물자·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 實踐努力을 경주해야 함.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형목,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연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暫定的으로 聯邦共和國의 地域政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聯邦制統一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用意를 가지고 있음. ○ 고위급회담을 잘 진척시켜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 놓아야하며, 이 회담이 결실을 맺게되면 最高位級會談이 가능할 것임. ○ 조국통일 방도에 대한 全民族的의合意를 위해 ‘民族統一 政治協商會議’ 召集을 提議함. ○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軍事的對峙狀態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임. 군축실현을 위해서는 外國軍과의 合同軍事演習 禁止,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남북이 각 10만명 이하로 段階的 武力縮小, 모든 민간 군사조직·민간무력해체, 새로운 軍事技術裝備 導入·開發 中止, 군축의 이행 검증이 되어야함. ○ 美國大統領의 단거리 핵무기 제거 제안을 환영하며, 응당 남한으로부터 핵무기 철거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함. |
| <p>1991.10.22~25. 제 4차 북남고위급회담(평양)</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北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급선무이므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緊急提案으로 제시함.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 <p>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p> <p>제 1 조 핵무기의 試驗·生産·搬入·所有·使用禁止</p> <p>제 2 조 핵무기 配備禁止, 핵무기 적재 비행기 함선의 領空·領海 通過, 着陸·寄港 금지</p> <p>제 3 조 핵무기 展開, 저장 및 핵우산 제공협약 체결 금지</p> <p>제 4 조 핵무기와 핵장비 동원이나 核戰爭을 가상한 軍事演習禁止</p> <p>제 5 조 美國의 핵무기와 美軍撤收 및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p> <p>제 6 조 미국 핵무기의 완전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p> <p>제 7 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p> <p>제 8 조 同宣言의 이행을 위한 共同機構 설치</p> <p>제 9 조 發效節次를 거쳐 문본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核武器가 남측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非核地帶化는 남측지역핵무기의 完全撤去로부터 시작되어야하며, 남측의 全面的이고 完全한 핵철거가 확인되면 어느때든 국제협약에 따르는 南北同時查察에 응할 것임. ○ 議題와 관련하여 合意文件의 채택을 위한 原則과 方法으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雙方提案중 共通의이거나 類似한 것을 合意文件으로 作成 - 쌍방이 공통으로 내놓은 不可侵問題는 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고 내용은 공통적인 조항들로 작성 - 또 하나의 독자적인 문건으로 '북남 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것. <p>등을 제외하면서, 2개의 合意文件 草案을 각각 제시하며, 두가지 문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의 문건으로 통합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있을수 있음.</p> <p>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초안)</p> <p>1. 不可侵</p> <p>제 1 조 상대방에 대한 武力使用 및 侵略禁止</p> <p>제 2 조 意見相異와 紛爭問題의 平和的 解決</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緊張狀態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통일시까지 남북관계가 잠정적 特殊關係임을 인정 -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의 노력경주 <p>○ 基本事項</p> <p>제 1 조 상대방 체제존중, 誹謗中傷 中止, 내부문제 불간섭</p> <p>제 2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交流實施</p> <p>제 3 조 이산가족들의 書信往來, 相逢, 訪問실시 및 再結合 推進</p> <p>제 4 조 상대방에 대한 侵略, 破壞, 顛覆活動 禁止. 불가침의 영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각기 管轄地域으로함.</p> <p>제 5 조 상호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p> <p>제 6 조 軍備競爭止揚,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군사정보 교환 및 軍人士間의 상호방문과 교류실현 2. 기동훈련 사전통보 및 參觀團 招請·交換 3.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4. 비무장지대의 緩衝地帶化 및 평화적 이용 5. 軍事力의 不均衡 시정 및 군비축소 협의 6. 現場檢證과 상호 監視體制 교환운영 7. 분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p>제 7 조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努力 및 평화체제 마련시까지 현 정전협정 준수</p> <p>제 8 조 경제, 교통, 체신,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보전 등 여러분야에서의 交流協力 支援保障</p> <p>제 9 조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 및 經濟協力 支援 保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로·해로·항로 개설 및 通過地點 지정, 長湍과 板門店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京義線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연결 2. 상대측지역 방문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름 3. 자기측지역 방문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과 無事歸還 보장 4. 관문점에 우편교환소 설치 및 전기통신교류 연결, 發展 5. 우편·전기통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國際的 協約에 따라 해결 6. 우편·전기통신에 대한 비밀보장 및 軍事的 目的 이용 금지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제 3조 不可侵 境界線은 1953. 7. 27. 군사정전협정 규정에 따름.</p> <p>제 4조 軍비경쟁중지 및 軍縮實現</p> <p>제 5조 쌍방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 設置 · 運營</p> <p>제 6조 동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北南軍事共同委員會 構成 · 運營</p> <p>제 7조 不可侵의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 강구.</p> <p style="text-align: center;">2. 北南 和解</p> <p>제 8조 상대방의 思想, 制度 認定, 尊重</p> <p>제 9조 상대방의 內部問題 불간섭</p> <p>제 10조 상대방에 대한 誹謗 中傷 中止</p> <p>제 11조 상대방에 대한 破壞 顛覆行爲 금지</p> <p>제 12조 各界人士 · 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 접촉 실현</p> <p>제 13조 同宣言 발효후 2개월 내에 北南정치분과위를 구성 ·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3. 北南 交流, 協力</p> <p>제 14조 民族經濟의 발전과 민족전체의 福利向上을 위한 경제협력, 交流實現</p> <p>제 15조 과학 · 기술 · 교육 · 보건 · 체육 · 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와 經驗交換, 協力</p> <p>제 16조 끊어진 철도 · 도로 연결, 해로 · 항로 개설 및 체신망 연결</p> <p>제 17조 人道的 분야에서 상호 협력 · 교류 실현 및 이산가족 · 친척들의 고통해소 대책강구</p> <p>제 18조 國際舞臺에서의 상호 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p> <p>제 19조 동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北南협력, 교류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4. 修正 및 效力</p> <p>제 20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 보완 가능</p> <p>제 21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交換日부터 效力發生</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7. 物資交易과 경제협력은 품목별, 事業別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p> <p>8. 상호간의 물자교역에 대한 課稅免除 및 精算計定 結核원칙 적용</p> <p>9. 자본의 이동 및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 보호조치 강구</p> <p>10. 본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南北通行委員會, 南北通信委員會, 南北通商 및 經濟協力委員會 구성·운영</p> <p>제10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및 민족의 利益과 自尊을 위해 공동노력</p> <p>제11조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 설치</p> <p>제12조 ‘政治軍事分科委員會’와 ‘交流·協力分科委員會’ 설치</p> <p>제13조 본합의서는 兩者, 多者間의 조약에 무영향</p> <p>제14조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가능</p> <p>제15조 발효절차를 거쳐 文本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p>* 쌍방은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단일 합의서 명칭과 내용문제 등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2차례 실무대표 접촉을 가짐.</p>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 接觸</p> <p>— 일 시 : 1991. 10. 23. 18 : 15 ~ 10. 24. 01 : 05</p> <p>— 接觸代表 : 宋漢虎, 林東源, 李東馥</p> <p>— 接觸結果 : 단일합의서 명칭, 구성체계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異見을 좁히지 못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1. 남과 북은 上程된 의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함.</p> <p>2. 單一合意書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함.</p> <p>3. 단일합의서의 구성은 ①序文 ②南北和解 ③南北不可侵 ④南北交流·協力 ⑤發效條項 순으로 함.</p> <p>4. 단일합의서 내용은 제 4 차회담후 판문점 실무대표 접촉을 통</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 쌍방은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단일 합의서 명칭과 내용문제 등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2차례 실무대표 접촉을 가짐.</p>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接觸</p> <p>— 日 時 : 1991. 10. 23. 18 : 15 ~ 10. 24. 01 : 05</p> <p>— 접촉대표 : 백남준, 최우진, 김영철</p> <p>— 접촉결과 : 單一合意書 명칭, 구성체계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異見을 좁히지 못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과 남은 상정된 議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함. 2. 단일합의서 명칭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로 함. 3. 단일합의서의 구성은 ① 序文, ② 北南和解, ③ 南北 不可侵, ④ 北南協力交流, ⑤ 發效條項 順으로 함. 4. 단일합의서 내용은 제 4 차 회담 후 판문점 實務代表 接觸을 통해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10.29.~30. 祖國統一祈願 南 北佛敎徒 合同會 議 (LA관음사)</p> | <p>해 협의, 해결함.</p> <p>* 쌍방은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臺로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정리, 조정하여 共同發表</p> <p>共同發表文 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일문건으로된 합의서 채택 2. 합의서 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3. 합의서 내용 구성 :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4.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조정을 위한 대표접촉 개최 5. 1991. 12. 10.~13. 서울에서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p>代表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鄭元植(국무총리) · 대 표 : 金宗輝(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宋膺燮(합참 제 1 차장), 宋漢虎(통일원 차관), 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 林東源(외교안보연구원장), 李東馥(국무총리 특별보좌관) <p>南北 佛敎徒 合同會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主催 : LA 한민족불교교류추진미주불교협의회 (회장 김도안, 부회장 신법타) ○ 提議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한 共同法會 주최 - 佛敎遺蹟地 발굴 공동참여 -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세미나 개최 ○ 參加者 : 서의현(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전운덕(종단협 부회장), 박혜운(종단협 부회장), 송월주(남북불교문화연구원장)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10.29.~30. 조국 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 동회의(LA 觀 音寺)</p> | <p>협의, 解決함.</p> <p>* 쌍방은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合意書 內容을 整理 · 調整하여 공동발표</p> <p>共同報道文 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單一文件으로된 合意書 採擇 2. 合意書 名稱 : 북남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관한 합의서 3. 합의서 내용 구성 : 서문, 북남화해, 북남불가침, 북남협력교류, 수정 및 발효 4. 빠른 시일 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조정을 위한 대표접촉 개최 5. 1991. 12. 10.~13. 서울에서 제 5차 북남고위급회담 개최 <p>代表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연형묵(정무원 총리) · 대 표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안병수(조평통 부위원 장), 백남준(정무원 참사실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 부 부부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 력부 부국장) <p>南北 佛敎徒 合同會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 LA 한민족 佛敎交流推進 美洲佛敎協議會(회장 김도안, 부 회장 신법타) ○ 主要 發言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철수 - 보안법 철폐 ○ 참가자 :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화두(동고 문), 심상련(동서기장), 이동철(동평양시위원회 위원장)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10. 30.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대북서한 (*전달 : 판문점 연락관)</p> | <p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연구 제안 예비접촉은, 관례상 민간인 차원의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일정을 서신으로 알림. ○ 세미나 개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 부 제 : 문화와 여성 - 장 소 : 라마다올림피아호텔 - 기 간 : 1991. 11. 18. ~23. - 참가규모 : 100명 내외 - 경 비 : 북측 참가자의 일체 경비 초청자 부담 |
| <p>1991. 11. 7.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日字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회담 합의서 조정과 文案調整을 위한 대표접촉 일자를 11. 11로한 북측제외에 동의하며 우리측 대표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대표 : 宋漢虎. 林東源. 李東馥 (이상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1. 11. 8. 盧泰愚 大統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p> |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의 非核化 宣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는 핵에너지를 平和的 目的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핵무기의 擴散防止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國際原子力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10. 30. 올림픽위원회 위 원장 김유순, 대 남전통문</p> | <p>柔道選手 이창수 送還 要求</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에 唯一팀을 구성하여 國際競技에 출전할 의사가 있다면 北의 柔術選手를 誘引, 拉致해 간데 대해 사죄하고 북한으로 보낼 것. ○ 우리의 요구에 시급히 肯定的인 措置를 취함으로써 北南體育會談이 순조롭게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함. | | |
| <p>1991. 11. 1. 최고인민회의 부 의장 여연구, 대 남서한</p> | <p>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관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차 서울토론회 조직과 관련 實務問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意見을 알림. - 開催 日時를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연기해줄 것 - 우리측의 대표단 구성에 대표 6~7명 외에 3~4명의 隨員과 5~6명의 記者를 포함해줄 것 - 在日 女性들을 대표하는 總聯女性代表 2명, 民團女性代表 2명, 韓統聯女性代表 1명을 참가시킬 것 - 慶州·공덕귀 덕 방문 취소, 1개대학·工場參觀 강연요구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선언</p> | <p>機構와 체결한 核安全措施協定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철거한 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p> <p>3.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殺傷武器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化學·生物武器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國際的 合意를 준수한다.</p> | | |
| <p>1991. 11. 9.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위원회, 북측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 女性代表 서울세미나 참가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자 : 11. 25.~30.까지(당초보다 1주일 연기) ○ 대표단 구성 : 대표 5명, 수행원·기자 10명 ○ 참관지 : 삼성전자, 용인 민속촌, 이화여대 방문(*경주, 공덕귀宅 방문 취소) ○ 참석대표 : 이우정(민주당 최고위원), 이효재(여성단체연합회장), 윤정옥(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 |
| <p>1991. 11. 11.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차 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적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中間題目 內容體系順으로 토의해 나가되, 雙方立場의 주요 차이점을 해소한 후 문안정리 해야함. ○ 4차 본회담시 제시한 우리측 합의서의 내용 수정부분은 中間題目에 맞게 조항을 再分類 하였으며 條文數를 15개에서 26개로 늘렸음. 3통을 보장하기 위한 10개항 실천조치들을 독립조항 5개 항으로 축소 조정 하였고, 남북고위급회담 傘下協議機構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 연락대표부, 남북군사위원회, 남북통행위원회, 남북통신위원회, 남북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 등 執行的 성격의 5개 실천기구를 두어야 함. ○ 合意文件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6개 중요조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備縮小를 추진하기 위해 핵무기와 化學·生物武器 등 대량 살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11. 9.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 울 세미나 관련 북측대표단·남 측실행위원회,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북측 여성대표 서울세미나 참가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催日字 : 11. 25~30일까지 (*당초보다 1주일 연기) ○ 代表團 構成 : 대표 5명, 수행원·기자 10명 ○ 參觀地 : 삼성전자, 용인민속촌, 이화여대방문 (* 경주·공덕귀덕 방문 취소) ○ 참석대표 :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정순명(조평통 참사), 김선옥(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
| <p>1991. 11. 11. 제 5차 북남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차 대 표접촉(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독수리훈련은 대규모 奇襲攻擊 訓練이며, 反對話·反統一·反平和的인 것임. ○ 序文에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라는 내용만 추가한 4차회담시 제시했던 합의서(안)제시 ○ 남측 합의서(안)의 내용중 북측(안)에 없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불필요함을 강조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11. 15. 제 5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2차 대 표접촉 (판문점 평화의집)</p> | <p>상무기를 포함한 기습공격 능력을 우선 제거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사찰을 무조건 수용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전면 제거하는 등 盧泰愚 大統領의 韓半島의 非核化 宣言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p>○ 합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1. 15. 판문점 평화의집. <p>○ 참석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
| <p>1991. 11. 20. 제 5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차 대</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p>○ 제 1차 대표접촉시 쌍방 합의서(안)의 差異點中 중간제목별 분류 방법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和解'분야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근본토대가 되는 條項들을 포함시켜야 함. - 선언적 합의만 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과 대결의 관계에 묶여 있을 수 밖에 없음. - 효율적인 會議運營을 위해 쌍방이 차이점을 보완, 문제 중심으로 내용조정과 中間題目別 조항분류를 마무리한 후 文案整理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 | | |
| | <p>○ 차기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1. 20. 판문점 통일각</p> <p>○ 참석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
|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p>○ 북측 입장을 감안한 새로운 合意書(안)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문의 "쌍방이 각기 國際聯合 會員國으로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락한 사실에 유의하며" 部分削除, "나라와 나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1. 11. 15. 제 5차 북남고위 급회담 제 2차 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 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1. 15. 판문점 평화의집 <p style="text-align: center;">○ 參席代表 : 백남준(북남고위급회담 대표),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1차 접촉시 案中 일부 내용을 조정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和解’부분에 ‘國際舞臺에서 相互協力’조항(제 6조)을 新設 - ‘分科委員會’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 설치(* 종전안 2개월 이내 설치) - ‘軍事分科委員會’설치 - ‘불가침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 조항(* 종전안 제13조)을 삭제 - 協力, 交流 부분중 ‘철도·도로 연결, 海路·航路 개설, 遞信網 연결’조항(* 종전안 제16조)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 : 철도·도로 연결, 海路·航路 개설 ·제17조 : 遞信망 連結 - 조항별 내용 검토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장 되풀이 <p style="text-align: center;">○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1. 20.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 參席者 : 백남준(북남고위급회담 대표),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
| <p>1991. 11. 20. 제 5차 북남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차 대</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합의서 수정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조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認定하고 尊重한다.”는 표현대신에 “相對方에 存在하는 制度를 認定하고 尊重한다.”로 수정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표접촉(판문점 통일각) | 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며”를 추가 - 제 1 조를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로 수정, 북측은 ‘체제’를 ‘제도’로 표기해도 무방(편의주의) - 舊合意書 5조(언론, 출판물의 상호개방)를 ‘和解’ 분야에서 ‘交流·協力’분야 제16조로 수정 분류 - 제11조 (紛爭의 平和的 解決) 조항에 ‘當局間의’라는 용어를 삭제 - 제13조 5항 (기습공격능력 우선제거 및 군축추진)중 “大量 殺傷武器를 포함한”을 “대량 살상무기와”로 修正 등 7건 ○ 합의사항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1. 26. 평화의집 ○ 참석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1991. 11. 26. 제 5차 남북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4차 대 표 접촉(판문점 평화의집) | 主要 發言 要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례 합의서 交換을 통해 북측의 立場과 主張을 크게 고려한 합 의서 안을 제시함. -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항 등 6개항 조정안 제시 ○ 쌍방간 본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요조항에 대해 입장 재차 설명 ○ 합의 사항 -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전 더 이상의 대표접촉을 안 하기로 합의 ○ 참석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
| 1991.12.10.~13. 제 5차 남북고위 급회담 (서울쉐 라톤 워커히 호텔) | 제 5차 南北高位級會談 基調 演說 要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례 대표접촉에서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한 것은 북측이 相互體制 를 존중·인정한다고 하면서도 '當事者解決原則'을 거부하는 이중 적 태도와 원칙적·선언적 합의만을 강조,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 천적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은데 있음. ○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과 대표접촉과정에서 제시된 북측의견을 고 려한 합의서 修正案을 제시함. | | |
|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수정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常設連絡事務所 서울·평양 설치"를 "판문점에 상설 연락사무 처를 설치하고, 앞으로 서울·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 구한다."로 수정 ② 不可侵 境界線을 "陸上에서는 停戰協定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11. 26. 제 5차 북남고위 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4차 대 표접촉(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序文 一部를 수정한 合意書를 제시하고, 남측이 提示한 修正合意書는 中間題目에 따라 조항을 分類하거나 서문의 표현을 고치고 일부 조항의 위치를 變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 ○ 남측안 제 7조 ‘常設連絡事務處 設置’문제는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둘 用意가 있음을 표명 ○ 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차 북남고위급회담 전 더 이상의 대표접촉을 안하기로 합의 ○ 참석대표 : 백남준(북남고위급회담 대표), 최우진(북남고위급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p>1991.12.10.~13. 제 5차 북남고위 급 회담(서울, 쉐라톤 워커히 호텔)</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北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차례의 대표접촉을 評價하나, 접촉과정에서 남측이 우리가 受容할 수 없는 條項들을 계속 고집하여 合意書 文案整理를 마무리짓지 못했음. ○ 남조선에 배치된 美國 核武器 문제를 제쳐놓고 우리에게 대한 一方的인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公정치 못하며,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와 이에 基礎한 북남의 同時 査察이 되어야 함. ○ 盧泰愚 大統領의 ‘非核化 宣言’은 一步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인해 핵문제 해결을 하기위한 協議의 길이 열렸으므로 제 4차 회담시 제의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草案을 協議採擇할 것을 提議함. ○ 제 4차 대표접촉시 제시한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p style="text-align: center;">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관한 합의서(안) 수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해부문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 신설 (제 6조) ② 不可侵部門 제10조 불가침 경계선 조항에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 해온 지역”을 추가 하고 ‘南北軍事共同委員會 設置’를 제13조에 신설.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로하고, 海上에서는 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 으로 수정</p> <p>③ 불가침 이행 보장조치 7개항의 세부항목을 軍事的 信賴構築, 군 비축소 現場檢證,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5개 독립조항으로 조정</p> <p>*총 28개 조항으로 조정</p> <p>○ 北側은 核擴散防止條約에 가입한 이상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 하며, 盧泰愚 大統領의 ‘韓半 島의 非核化와 平和 構築을 위한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야함.</p> <p>○ 전문과 5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 을 緊急提案으로 제시함.</p> <p>○ 남북 쌍방간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관한 합의서가 이루어지면 비핵 화를 위한 示範措置로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민 간시설에 대한 同時査察 실시를 제의하며,</p> <p>○ 시범사찰 대상으로 우리측은 북한의 順天비행장과 영변의 핵시설, 북한측은 우리측의 群山비행장이나 그밖에 선정하는 군사 및 민간 시설로함. (*주한미군 시설·기지도 사찰 대상에 포함됨.)</p> <p>○ 이 시범사찰은 1992. 1. 31. 이전에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 찰 내용과 방법은 빠른 시일 안에 協議·決定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조정을 위해 代表接觸을 가질 것에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 接觸</p> <p>○ 2일 회의후 대표접촉을 통해 서문과 25개 조항으로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共同 發表文’ 타결</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 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장 南北和解</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③ 交流協力部門 제17조에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보도분야 협력·교류”를 명시하고,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설치 조항을 제23조로 신설</p> <p>④ ‘各界人士 자유왕래·접촉’은 交流, 協力部門 제18조로 수정 분류</p> <p>○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를 합의서 타결후 구성될 北南軍事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1992년 한 해 만이라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할 것과 임수경·문익환을 금년 말 이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 조정을 위해 대표접촉을 가질 것에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 接觸</p> <p>○ 2 일 회의후 대표접촉을 통해 서문과 25개 조항으로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공동 발표문’ 타결</p> <p style="text-align: center;">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내용 요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北南和解</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제 1조 상대방의 制度認定 尊重</p> <p>제 2조 상대방의 內部問題 不干涉</p> <p>제 3조 상대방에 대한 誹謗·中傷 중지</p> <p>제 4조 상대방을 破壞·顛覆하려는 일체의 행위 중지</p> <p>제 5조 정전상태를 북남간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 준수</p> <p>제 6조 國際舞臺에서 대결과 競爭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共同努力</p> <p>제 7조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板門店에 連絡事務所를 設置·運營</p> <p>제 8조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南北政治分科委員會 構成</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장 北南 不可侵</p> <p>제 9조 상대방에 대한 武力使用 및 武力侵略 禁止</p> <p>제 10조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p> <p>제 11조 不可侵의 境界線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함.</p> <p>제 12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北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軍事的 信賴造成과 軍縮實現을 위한 문제 협의·추진</p> <p>제 13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제 14조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南北軍事分科委員會 構成</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장 北南協力, 交流</p> <p>제 15조 資源의 共同開發,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등 경제문제와 협력 실시</p> <p>제 16조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분야에서</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 <p>에서의 交流와 協力 실시</p> <p>제17조 民族構成員들의 자유왕래와 접촉실현</p> <p>제18조 이산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 상봉, 방문실시, 제결합 실현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對策講究</p> <p>제19조 끊어진 鐵道·道路 연결 및 海路·航路 개설</p> <p>제20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시설 설치·연결 및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秘密 保障</p> <p>제21조 國際舞臺에서 경제·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대의 共同進出</p> <p>제22조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운영</p> <p>제23조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修正 및 發效</p> <p>제24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보충 가능</p> <p>제25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 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發表文(全文)</p> <p>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p> <p>2.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p> <p>3. 남과 북은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團</p> <p>· 首席代表 : 鄭元植(국무총리)</p> <p>· 代 表 : 金宗輝(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宋膺燮(합참 제 1 차장), 宋漢虎(통일원 차관), 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 林東源(외교안보연구원 원장), 李東馥(국</p>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 <p>協力과 交流실시</p> <p>제17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와 접촉실현</p> <p>제18조 이산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通信去來, 來往, 相逢, 訪問 實施, 재결합 실현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p> <p>제19조 끊어진 철도·도로연결 및 海路·航路 개설</p> <p>제20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 시설 설치·연결 및 우편·전기통신 交流의 秘密 保障</p> <p>제21조 國際舞臺에서 경제·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대의 共同進出</p> <p>제22조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北南經濟協力·交流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 構成·運營</p> <p>제23조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북남협력·교류 분과위원회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修正 및 發效</p> <p>제24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보충 가능</p> <p>제25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 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報道文(全文)</p> <p>1. 北과 南은 1991년 12월 13일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署名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 기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거치기로 합의 하였다.</p> <p>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核武器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代表接觸을 가지기로 하였다.</p> <p>3. 제 6 차 본회담은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사이에 平壤에서 하기로 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團</p> <p>· 首席代表 : 연형목(정무원 총리)</p> <p>· 代 表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 백남준(조평통 서기국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1. 12. 17.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무총리 특별보좌관)</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12월 23일 오전 10시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동 접촉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월 19일 평화의집에서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 |
| <p>1991. 12. 26. 核問題 협의를 위한 제 1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안)을 제시, 北側은 1992. 1. 15.까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批准·發效시켜야 하며, 1992. 1. 15.까지 示範査察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 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2. 28.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 | |
| <p>1991. 12. 28. 核問題 협의를 위한 제 2차 代表接觸 (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接觸 經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촉시 북측이 제시한 案을 수용한 '共同宣言' 수정안을 제시 ○ 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문, 핵에너지 平和目的 利用,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불보유,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 3개항.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2. 31.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 | |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 (인민무력부 부국장) | | |
| 1991. 12. 18. 정무원 총리 연 형묵, 대남전통 문 |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地帶化 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日字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合意된대로 첫 代表接觸을 12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 ○ 이 代表접촉은 合意에 따라 代表 2명, 專門家 3명, 隨員 2~3名이 참가하게 될 것이며, 實務節次 問題는 관례대로 하면 될 것이므로 責任連絡員 接觸은 不必要함. | | |
| 1991. 12. 26. 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 1차 대 표접촉(판문점 통일각)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撤回하고, 核再處理施設 不保有 등을 명시한 '朝鮮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초안)'을 提示함. ○ 合意 事項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2. 28. 판문점 평화의 집 ○ 참석대표 :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 | |
| 1991. 12. 28. 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 2차 대 표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 <p style="text-align: center;">接觸 經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접촉에서 제시한 남측 제안을 수용한 '共同宣言' 修正案을 제 시, 서문, 핵에너지 平和目的 利用,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 설 不保有,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 3개 항에 대해 합의 ○ 合意 事項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1. 12. 31.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 |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12. 31. 核問題 協議를 위한 제 3차 代 表接觸(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좌관)</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 문안협의 가서명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p> <p>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核戰爭危險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安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平和的 目的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富集농축시설을 保有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節次와 方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構成·運營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 공동 발표문</p> <p>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차례 進行되었다.</p> <p>쌍방대표들은 한반도의 非核化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祖國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條件과 環境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 하였다.</p> <p>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 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1. 12. 31. 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 대 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文案合意 假署名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p> <p>北과 南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核戰爭危險을 除去하고 우 리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유리한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며 이시 아와 世界의 平和와 安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한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 비·사용을 하지 않는다. 2. 북과 남은 핵에너지를 오직 平和的 目的에만 이용한다. 3. 북과 남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保有하지 아니한다. 4.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하여 相對側이 選定 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査察을 실시한다. 5. 북과 남은 이 共同宣言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 개월 안에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북남 공동 보도문</p> <p>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다.</p> <p>쌍방대표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核戰爭의 위험을 제거 하고 祖國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유리한 條件과 環境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假署名 하였다.</p> <p>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北과 南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에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雙方總理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p> <p>3.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 하였다.</p> <p>○ 참석대표 : 林東源(외교안보연구원장), 李東馥(국무총리 특별보좌관)</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서 發效되도록 한다.</p> <p>2. 北과 南은 이를 위한 事前措置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총리가 署名한 ‘共同宣言’文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p> <p>3. 北과 南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p> <p>○ 參席代表 :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p> |

1992年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1. 10.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文本交換 일자 통보</p> <p>○ 1992년 1월 7일 북측제외에 동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총리 서명 문본의 교환을 위해 高位級會談 代表 1명, 隨行員 1명을 1992년 1월 14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할 것이며, 우리측은 林東源 代表를 파견할 것임을 알림.</p> |
| <p>1992. 1. 14.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총리 서명 문본 교환</p> <p>○ 차기 교환일시 : 1992. 1. 21. ○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p>1992. 1. 15.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제의</p> <p>○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3개 분과) 구성·운영 방안의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1992. 1. 23.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p>1992. 1. 21.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총리 서명 문본 교환</p> <p>○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1992. 1. 7. 정무원 총리 연 형묵, 대남전통 문 |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文本 交換 日字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언' 總理 署名 文本을 교환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4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고위급회담 대표 1명, 수원 1명을 派遣할 計劃임을 통지함. ○ 南側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망함. |
| 1992. 1. 14. 북남고위급회담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본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교환일시 : 1992. 1. 21.로 합의 ○ 참석대표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1992. 1. 21. 북남고위급회담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본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표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1992. 1. 21. 정무원 총리 연 |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 構成 · 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代表接觸에 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1. 15. 남측제외에 동의, 우리측 대표로 최우진 · 김영철 북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1. 2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문제협의를 위한 제 1차 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하되, 교류·협력분과는 제 1분과 非經濟部門, 제 2분과 經濟部門으로 구분 - 기능은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임무의 이행·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협의 -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 기타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월 1회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인원의 陪席下에 雙方 委員長이 공동진행 -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의 서명으로 효력 발생 ○ 남북 쌍방은 합의한대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비핵화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 안에 발족시켜 6차회담 직후 활동이 본격화 되어야 하며,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 문제도 병행 토의할 것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회의 일자 및 장소 : 1992. 1. 29. 판문점 통일각 ○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1. 29.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2차</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대표접촉에서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도 협의해야함.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질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형식 : 단일 합의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형북, 대남전통 문</p> <p>1992. 1. 23.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 구성·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 표접촉(판문점 평화의집)</p> | <p>남고위급회담 대표 및 수원 4명이 판문점 평화의집에 나갈 것임을 통 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高位級會談 代表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隨員은 5~6명 으로 함. - 기능은 기본합의서에 구체적 履行對策을 협의하여 附屬合意書를 채택하며,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한다. - 분과위원회 회의는 板門店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 개 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 도 있음. - 회의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公開도 가능 - 분과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高位級會談 團長이 서명하는 것으 로 이루어 지고, 서명 교환한 날로부터 效力 發生 ○ 핵통제공동위원회는 6차회담시 공동선언 발효후 대표접촉을 통해 1 개월 내에 구성이 가능할 것임. ○ 連絡事務所 設置·運營問題는 政治分科委員會가 구성되면 討議할 사안으로 공동위원회와 같이 3개월 이내 구성이 가능할 것임. ○ 차기 회의 일자 및 장소 : 1992. 1. 29.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1. 29.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科委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 修正案 提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교체서 5일전 통보 - 會議는 월 1회 이상 開催를 原則으로 하고, 합의에 따라 隨時開 催도 가능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른 分科委員會와 동일하게 7명으로 구성토록 조정, 委員長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小委員會'로 명칭 변경 - 機能 : 단일문건일 경우 각 분과위를 포괄하는 공통기능 3개항을 명시하고 그밖에 고위급회담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토록 함. - 運營 : 분과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도 가능, 장소는 판문점 또는 합의하는 장소 - 本會談과의 關係 : 분과위원회에서 협의 결과는 高位級會談에 보고 - 效力發生 : 합의사항은 고위급회담에서 총리 서명으로 발효하되 합의에 따라 서명, 교환하는 방법도 가능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2. 7. 판문점 평화의집 ○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은 쌍방 委員長이 共同으로 進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問題는 이번 대표접촉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도록 總理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치 않으며 示範查察이든 全面查察이든 核統制共同委員會가 構成되어 협의, 해결할 문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2. 7. 판문점 평화의집 ○ 참석대표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1. 30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고기준,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기독교 대표단 KNCC 총회참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CC 제41차 총회에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參加問題와 관련, 實務問題 協議를 위해 1992. 1. 6.,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權晔景 KNCC 총무에게 제의하고 우리측은 2명의 실무대표를 파견할 계획임을 통보함. |
| <p>1992. 1. 31. 국제기구협조총국장 한태혁,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豆滿江地域 開發을 위한 서울會議 北側 代表團 參加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개발계획 주관 서울에서 열리는 豆滿江開發을 위한 計劃委員會 제 1차 회의 참석과 관련, 實務的 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1992. 2. 6. 15: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金仁浩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長(*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계획관리위원회 제 1차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단장)에게 제의함. ○ 실무대표 1명, 판문점 연락원 1명을 파견할 계획임.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1992. 2. 1. 金仁浩 경제기획 원 대외경제조정 실장, 대북전통문 | <p style="text-align: center;">豆滿江 開發會議 北側代表團 參加關聯</p> ○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북측대표단 참가 관련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 일자를 1992. 2. 8.로 修正提議함. |
| 1992. 2. 1. 權培景 KNCC總 務, 대북전통문 |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北側代表團 參加關聯</p> ○ KNCC 제41차 총회에 北側代表團 참가와 관련한 代表接觸 日字를 1992. 2. 10.로 수정제의함. |
| 1992. 2. 7. '남북고위급회담 分科委員會 構成 ·運營問題 協議 를 위한 제 3차 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집)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構成 ·運營問題 合意</p>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합 의,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 제 1일 회의에서 署名·發效키로 하고 합의 내용에 가서명함. |
|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構成 ·運營에 關한 合意書</p>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南北政治分科委員會, 南北軍事分科委員 會,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構成·運營하기로 합 의하였다. ·제 1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2. 6. 국제기구협조총 국장 한태혁,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豆滿江地域 開發을 위한 서울會議 北側 代表團 參加 關聯</p> <p>○ 두만강지역개발회의 참가 관련, 남측이 수정제의한 접촉일자에 동의함.</p> |
| <p>1992. 2. 6. 조선기독교도 연 맹 서기장 고기 준,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기독교도 대표단 KNCC총회 참가 관련</p> <p>○ KNCC총회 참석과 관련, 남측이 수정제의한 접촉일자에 동의함.</p> |
| <p>1992. 2. 7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문제 협의 를 위한 제 3차 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 構成 · 運營問題 合意</p> <p>○ 北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 · 運營에 관한 合意書 내용에 합의, 제 6차 북남고위급회담 제 1일 회의에서 서명 · 발효키로 하고 합의 내용에 가서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 運營에 관한 合意書</p> <p>北과 南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회담 태두리 안에서 北南政治分科委員會, 北南軍事分科委員會, 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構成 · 運營하기로 합의 하였다.</p> <p>제 1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南北高位級會談 대표로 한다.</p> <p>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交替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隨行員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2 조 各 分科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p> <p>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履行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각 附屬合意書를 작성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p> <p>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南北政治分科委員會에서 작성한다.</p> <p>제 3 조 各 分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隨時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板門店 남측지역 '평화의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雙方 委員長이 共同으로 運營한다.</p> <p>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公開로 할 수도 있다.</p> <p>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相對側 地域을 往來하는 인원들에 대한 身邊安全保障, 便宜提供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분과위원회에서 協議하여 定한다.</p>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 <p>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委員長 1명과 委員 6명으로 構成하며, 위원장은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p> <p>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委員長과 委員들을 交替할 경우 事前에 相對側에 이를 通報한다.</p> <p>③ 隨員은 6名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2조 各 分科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p> <p>① 각 분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인 對策을 협의한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該當部問의 具體的인 履行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附屬合意書를 作成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북남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작성한다. '北南連絡事務所의 設置·運營에 관한 합의서'는 北南政治分科委員會에서 作成한다.</p> <p>제 3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각 분과위원회 會議는 월 1회 開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隨時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雙方 委員長이 共同으로 運營한다.</p> <p>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合意하여 公開로 할 수도 있다.</p> <p>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위해 相對側 地域을 來往하는 人員들에 대한 身邊安全 擔保, 便宜提供과 會議記錄 등 實務節次는 慣例대로 한다.</p> <p>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各 分科委員會에서 協議하여 정한다.</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 <p>제 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南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合意文件에 署名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p> <p>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雙方總理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p> <p>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雙方 總理가 合意文件을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南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p> <p>제 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2년 2월 1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
| 1992. 2. 8. 두만강지역 개발 회의 북측대표단 참가 관련 실무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p>豆滿江地域 開發會議 北側代表 參加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參加 人員 : 5명 미만(*기자 동행 불허) ○ 入出 經路 : 판문점으로 입경, UNDP 측과 동행 제 3국으로 출국 ○ 身邊安全保障覺書, 참가자 명단 교환 : 內務部長官 명의의 신변안전 보장각서와 북측 대표단 명단을 1992. 2. 21. 판문점에서 교환 ○ 往來節次 및 便宜提供 : 관례에 따름 ○ 滯留日程 : 1992. 2. 26. ~ 3. 2. (*숙소 : 신라호텔) ○ 기타 : 참가국 대표단 전원의 산업시찰 이외 북측대표단을 위한 별도 일정 없음. ○ 參席代表 : 윤영대(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 3 협력관) | | |
| 1992. 2. 8. 김용환 남북고위 | <p>제 6차 고위급회담 實務問題 協議을 위한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촉일시 : 1992. 2. 10.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2. 8 豆滿江地域 開發 會議 북측 대표 단 참가 관련 실 무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제 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 를 北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雙 方 總理가 합의문건에 署名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p> <p>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重要한 文件은 雙方 總理가 署名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발 생한다.</p> <p>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總理가 合意文件을 署名, 交換하는 방 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北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 야 한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修正·補充할 수 있다.</p> <p>제 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署名하여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2년 2월 19일</p> <p>○ 參席代表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豆滿江地域 開發會議 北側代表 參加 合意</p> <p>○ 參加 人員 : 5명 미만(*기자 동행 불허)</p> <p>○ 入出 經路 : 판문점으로 入京, UNDP 측과 동행 제 3국으로 出國</p> <p>○ 신변안전보장각서, 참가자 명단 교환 : 南側 內務部長官 名義의 身 邊安全保障覺書와 북측 대표단 명단을 1992. 2. 21. 판문점에서 交換</p> <p>○ 왕래절차 및 편의제공 : 관례에 따름</p> <p>○ 체류일정 : 1992. 2. 26.~3. 2. (*숙소 : 신라호텔)</p> <p>○ 기타 : 참가국 대표단 전원의 산업시찰 외에 북측대표단을 위한 별 도 일정 없음.</p> <p>○ 參席代表 : 립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 서기장)</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급회담 책임연락관, 대북전통문</p> <p>1992. 2. 10.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p>1992. 2. 10. KNCC,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접촉(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1992. 2. 11.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p>1992. 2. 13.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 접촉장소 : 판문점 평화의 집</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교체 통보</p> <p>○ 新任 :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 孔魯明(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p> <p>○ 解任 : 宋漢虎(통일원 차관), 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p>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北韓側 代表團 參加合意</p> <p>○ 合意事項</p> <p>— 북측 대표단 구성 : 10명(목사, 신학원 교수·학생, 기록, 통신 요원)</p> <p>— 신변안전보장각서·방문자명단 교환 : 1992. 2. 13. 판문점</p> <p>— 通過場所 : 板門店</p> <p>— 왕래절차 및 편의제공 : 관례에 따름</p> <p>— 체류일정 : 1992. 2. 15. ~ 2. 19. (4박 5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숙소 : 신라호텔</p> <p>○ 參席代表 : 권호경(KNCC 총무), 장기천(목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責任連絡官 접촉</p> <p>○ 協議內容 : 會談行事 運營問題, 합의서 발송절차·통지문제 등</p> <p>○ 次期接觸 일시 및 장소 : 1992. 2. 13.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責任連絡官 접촉</p> <p>○ 남측대표단 명단과 북측의 身邊安全保障覺書 交換, 체류일정·회담 운영 및 합의서 發效文本 형식 등에 관해 협의</p>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2. 10. 북측 책임연락원 최봉춘,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 準備관련 接觸日字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6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와 관련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일자를 1992. 2. 11. 평화의집으로 수정 제의함. |
| <p>1992. 2. 10. 조선기독교도연 맹, KNCC 대 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北韓側 代表團 參加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대표단 구성 : 10명(목사, 신학원 교수·학생, 기록·통신요원) - 신변안전보장각서, 방문자 명단 교환 : 1992. 2. 13. 판문점 - 통과장소 : 판문점 - 왕래절차 및 편의제공 : 관례에 따름 - 체류일정 : 1992. 2. 15. ~ 2. 19. (4박 5일) <li style="padding-left: 40px;">* 숙소 : 신라호텔 ○ 참석대표 : 고기준(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서기장), 김운봉(목사) |
| <p>1992. 2. 11. 북남고위급회담 책임연락원 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내용 : 회담행사 운영문제, 합의서 발송절차·통지문제 등 협의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2. 13. 판문점 통일각 |
| <p>1992. 2. 13. 북남고위급회담 책임연락원 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관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대표단 명단과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체류일정·회담 운영 및 합의서 발효문본 형식 등에 관해 협의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2. 14.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責任連絡官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문본 통보, 핵통제공동위 관련 대표접촉문제, 2일회의 순서 등 합의 | | |
| <p>1992.2.18.~2.21. 제 6차 남북고위 급회담 (평양)</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書 發效儀式 및 人事 發言(2. 19. 1일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發效文本 交換,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확인, 署名·交換의식 및 인사발언순으로 진행. ○ 쌍방은 오후에 별도의 대표접촉을 갖고 3個分科委員會 구성·운영문제, 첫 회의 일자, 核統制共同委員會 구성·운영문제, 제 7차 고위급회담 일자 등을 협의키로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표 : 林東源, 孔魯明 ○ 접촉일시 : 1992. 2. 19. 20 : 00~23 : 00 ○ 합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1992. 3. 6. 상호 통보 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 1992. 3. 9. 판문점 평화의 집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1992. 2. 14. 북남고위급회담 책임연락원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책임연락원 접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문본 통보, 핵통제공동위 관련 대표접촉문제, 2일회의 순서 등 합의 |
| 1992. 2. 14. 조선기독교도연 맹 중앙위 서기 장 고기준, 대남 전통문 |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參加 保留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있어, 남한 당국은 촬영기자의 동행, 서울-평양 사이의 通信保障을 해주지 않는 등 사실상 우리 대표단의 서울방문을 방해하므로 KNCC총회 참가를 보류함. |
| 1992.2.18.~2.21. 제 6차 북남고위 급회담(평양)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北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書 발효의식 및 인사 발언(2. 19. 1일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發效文本 交換,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확인, 署名·交換의식 및 人事發言順으로 進行. ○ 쌍방은 오후에 별도의 代表接觸을 갖고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첫 회의 일자, 핵통제공동위원회 構成·運營問題, 제 7차 고위급회담 일자 등을 협의기로 합의.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代表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代 表 : 최우진, 김영철 ○ 접촉일시 : 1992. 2. 19. 20 : 00~23 : 00 ○ 合意內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1992. 3. 6. 相互 通報 2. 北南政治分科委員會 제 1차 회의 개최 : 1992. 3. 9. 板門店 평화의 집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1992. 2. 27. 핵통제공동위원 회 구성·운영문 제협의를 위한 | 3.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 1992. 3. 13. 판문점 통일각 4.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 개최 : 1992. 3. 18. 판문점 평화의집 5.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 - 제 1차 대표접촉 : 1992. 2. 19. 평양 - 제 2차 대표접촉 : 1992. 2. 27. 통일각 6.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 : 1992. 5. 5~5. 8. 서울에서 개최 基調 演說 要旨(2日 會議) ○ 우리측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 북측도 이에 相應한 措置를 해주길 바람. ○ 합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해야할 重要하고 시급한 과제는 核戰爭威脅을 제거하는 일이므로 북측은 核安全措置 協定의 비준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최단시일 안에 국제핵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 代表團 · 수석대표 : 鄭元植(국무총리) · 대 표 : 金宗輝(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宋廣燮(합참 제 1차장), 林東源(통일원 차관),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 孔魯明(외교안보연구원 원장), 李東馥(국무총리 특별보좌관) 主要 發言 要旨 ○ 북측합의서(안)을 검토해 본 바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합의서의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찰규정 마련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않음.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2. 27.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 제협의를 위한</p> | <p>3. 北南軍事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개최 : 1992. 3. 13. 판문점 통일각</p> <p>4. 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개최 : 1992. 3. 18. 판문점 평화의 집</p> <p>5.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問題 협의 - 제 1 차 대표접촉 : 1992. 2. 19. 평양 - 제 2 차 대표접촉 : 1992. 2. 27. 통일각</p> <p>6. 제 7 차 北南高位級會談 : 1992. 5. 5. ~ 5. 8. 서울에서 개최</p> <p>기조 연설 요지</p> <p>○ 北南間의 합의문 해석과 실천방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7·4共同聲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임.</p> <p>1. 自主的 立場은 북남합의서를 이행하고, 祖國統一을 실현하는 데서 확고히 堅持해야 할 근본임.</p> <p>2. 平和統一의 전제를 마련하는데 先次的 힘을 넣는것이 중요함.</p> <p>3. 民族大團結의 堅持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함.</p> <p>○ 北과 南이 시급히 共同步調를 취할 문제는 對日關係에서 제기되는 '挺身隊', '일본의 핵무장화'문제로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고 쌍방 당국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함.</p> <p>대표단</p> <p>· 수석대표 : 연형묵(정무원 총리)</p> <p>· 대 표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 백남준(조평통 서기국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p> <p>主要 發言 要旨</p> <p>○ 1차 접촉시 남측이 제시한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는 駐韓美軍의 核武器·核基地를 査察對象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핵문제 해결에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非核化共</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제 2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定期會議 개최후 1개월 이내에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合意書 發效後 1개월 이내에 상호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실무위원회 설치, 專門家 陪席, 임시회의 소집 등이 합의서 내용에 포함 되어야함. <li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要旨 - 構成 : 委員長 포함 7명, 實務委員會 設置 - 機能 : 쌍방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情報交換 - 運營 : 定期會議 3개월 간격(5일 이내), 臨時會議 수시 - 查察規程 明文化 : 1차 정기회의후 1개월 이내 마련 - 示範查察 : 합의서 발효 1개월 이내 2개 시설 장소 - 合意事項 發效 : 쌍방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발생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3. 판문점 평화의 집 ○ 참석대표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孔魯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
| <p>1992. 3. 3.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3차 대표 접촉 (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化共同宣言 이행합의서 문제는 비핵화공동선언 1, 2, 3항이 무조항이므로 이를 규정에 따라 檢證하면 되는 것임. 별도의 합의서는 불필요함. ○ 북측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外部 核威脅 共同阻止 및 國際的 保障 問題'를 제기하는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간주됨. 내외의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해 示範查察을 해야함. ○ 合意書 修正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위원회 조항 삭제, 隨行員 條項(북측제시) 수용 - 전문가 의견 聽取條項 삭제, 정기회의 주기를 2개월로 조정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제 2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同宣言의 이행에 따른 전반적 문제보다는 査察問題만 強調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 非核化에 대한 주변 핵무기 保有國들의 國際的 擔保問題가 排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實務委員會’, ‘臨時會議’, ‘示範査察’, ‘發效問題’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초안) 主要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委員長 포함 5명 (2명은 현역 장령, 군관 포함), 수원 6명 - 機能 : 雙方 核施設 物質, 무기, 기지에 대한 정보교환, 비핵화공동선언 이행합의서, 외부의 핵위협 공동저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 - 운영 : 정기회의 2개월 간격 - 사찰규정 명문화 :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 채택 후 20일 이내 사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3.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3. 3.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3차 대표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공동선언은 非核化의 原則, 方向, 目標를 提示한 것으로, 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이 반드시 뒤따라야함. ○ 외부 핵위협에 대한 공동저지 및 國際的 保障問題는 비핵화공동선언의 本質問題임. ○ 남측이 핵사찰 대상으로 核施設·核物質만 명시하고 핵무기·핵기지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駐韓美軍 核武器에 대한 사찰을 회피하려는 ‘교묘하고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임. ○ 시범사찰보다 전면사찰을 실시해야 하고, 사찰규정은 대표접촉에서 아니라 核統制共同委員會가 構成·運營되어 協議, 決定해야 할 문제임.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4.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협의를 위한 제 4차 대표 접촉(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 사찰규정 채택후 20일 안에 查察實施 부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4.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孔魯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의 제 4조(사찰규정 '마련 時限')에서 사찰 실시의 前提條件으로 제시하고 있는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合意書 採擇'을 삭제 한다는 조건에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기능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合意書'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음. ○ 북측안의 '외부핵위협 공격저지 및 국제적 담보'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테두리 밖의 문제임. ○ 핵통제공동위원회 제 1차 회의후 1개월 이내에 查察規程을 마련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해야함.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6.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孔魯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3. 4.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 交替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朴庸玉(국방부 군비통제관), 해임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 |
| <p>1992. 3. 6.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 人員 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政治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이동복(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위 원 : 민병석(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김달술(통일원 자문위원), 최규학(총리실 심의관), 강근택(외무부 심의관), 신광옥(법무부 심의관), 신 정(국방부 소장)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軍事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박용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4. 핵통제공동위원 회구성·운영문 제 협의를 위한 제 4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4.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非核化共同宣言 履行과 관련한 사항은 核統制共同委員會의 基本 임무에 속하는 포괄적인 것이므로, 구체적 이행대책인 합의서가 필요함.</p> <p>○ 제 2조 1항 및 3항을 核施設·核物質(핵무기·핵기지도함)로 표기하는 折衷案을 제시함.</p> <p>○ “사찰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 다.”라는 修正案을 提示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6.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
| <p>1992. 3. 6. 정무원 총리 연 형목, 대남전통 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 人員 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政治分科委員會</p> <p>· 위원장 : 백남준(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p>· 위 원 :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조상호(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장), 정영춘(조평통 서기국 참사), 심태진(정무원 사무국 상급심위원), 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처장)</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軍事分科委員會</p> <p>· 위원장 :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6.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5차 대표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 김희상(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임태순(통일원 지문위원), 이영호(국방부 대령), 김영진(국방부 대령), 조상훈(외무부 심의관), 채준석(국방부 판단관) <li style="text-align: center;">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 위원장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위 원 : 김인호(경제기획원 실장), 송영대(통일원 지문위원), 박운서(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유득환(상공부 차관보), 신현웅(문화부 국장), 박수창(총리실 심의관) <li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 ○ 査察規程 마련 시한 명시가 合意齎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하고, 北이 이에 동의해 오기를 촉구함.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1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孔魯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3. 9.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1차 회의(판문점 평화의 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 ○ 政治分科委員會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南北和解分野에 관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함. - 南北和解를 위한 原則 提示 - 남북화해분야의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합의서(안)제시 ○ 핵사찰 수용 촉구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3. 27. 10:00, 판문점 통일각 ○ 참석대표 : 이동복(공동위원장), 민병석(이하 위원) 김달술, 최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6.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5차 대표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p> | <p>· 위 원 : 박용수(소장), 박성진(대좌), 리길청(대좌), 김민현(대좌), 박립수(대좌), 원동연(조평통 서기국 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p> <p>· 위원장 : 김정우(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p>· 위 원 : 김채성(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이순(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승국(노동청년사 부주필)</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남측의 사찰규정 마련 시한 주장에, 이 明示條項을 삭제하고 가서 명하거나 구성되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 넘겨서 協議토록 하고, 제 1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날짜를 정할 것을 主張</p> <p>○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10. 10 : 00, 판문점 통일각</p> <p>○ 참석대표 : 최우진(북남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p> |
| <p>1992. 3. 9.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초안)을 提示, 이 합의서 채택후 '南北政治共同委員會',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주장</p> <p style="text-align: center;">附屬合意書(案) 主要 內容</p> <p>—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부정하거나 敵對視하는 法律的, 制度的 裝置除去</p> <p>— 外勢의 온갖 內政干涉 행위에 가담·협력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板門店 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안)</p> <p>— 현 적십자연락사무소를 명칭만 변경하여 운영</p> <p>○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27. 판문점 통일각</p> <p>○ 參席代表 : 백남준(공동위원장), 김완수(이하 위원), 조상호, 최성</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10.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6차 대 표접촉(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學, 강근택, 신광옥, 신 정</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은 5번의 대표접촉에서 '別途의 合意書 採擇', '외부 핵위협 저지 국제적 담보 요구' 등 불필요한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査察規程 時限 明示', '示範査察'을 계속 거부하고 지연시키고 있음. ○ '사찰규정 마련 시한 명시' 문제는 합의서의 본질적 문제이므로 이에 동의해 오길 바랍.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14.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임동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공로명(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3. 13. 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 1차 회 의(판문점 통일 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불가침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附屬合意書를 作成해야 함. ○ 軍事分科委員會 협의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① 當事者 해결원칙 ② 和解·不可侵·교류협력의 균형추진 ③ 實踐性 保障 原則을 준수해야 함. ○ 남북불가침 분야 관련대책으로는 '武力 不使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불가침 분야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 附屬合意書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고, 군사공동위원회 및 직통전화 설치·운영합의서(안)제시.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3. 31.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박용옥(공동위원장), 김희상(이하 위원), 임태순, 이영호, 김영진, 조상훈, 채준석 |
| <p>1992. 3. 14.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문제 협의를</p> | <p style="text-align: center;">會 議 經 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규정 마련 시한 明示問題'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조항에서 삭제하는 대신 '共同發表文'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협의하고 토의 진행.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3. 10.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6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 <p>익, 정영춘, 심태진, 조성대</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査察規程 마련 時限을 명시하지는 南側 主張은 核統制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할 문제이며, 이미 합의된 사항만으로 合意書를 채택하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核統制共同委員會 제 1차 회의 날짜를 정할 것을 주장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3. 14.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참석대표 : 최우진(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p>1992. 3. 13.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분과위원회 회의가 堅持해야 할 입장과 자세로 ①自主的 立場 ②남은 對決觀念 脫皮 ③平和保障이며 ○ 남북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包括的 單一 附屬合意書(안)을 제시, 이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合意書(안)의 채택을 주장 |
| <p>1992. 3. 14.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p> | <p style="text-align: center;">會議 經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査察規程 마련 시한 明示問題'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조항에서 削除하는 대신 '共同發表文'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合意하고 討議 進行.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위한 제 7차 대표접촉(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내용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 조(査察規程 마련 시한) 및 제 6 조(시범사찰) 삭제 - 제 3 조 1항(會議週期)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조정 - 제 5 조(합의사항 發效節次)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發生한다.”를 추가. - 合意文件 交換 日時 및 場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1992. 3. 17. 15:00 중감위 회의실 · 2차 : 1992. 3. 19. 09:00 중감위 회의실 - 합의서 발효 일자 : 1992. 3. 19. <p>○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에 假署名 交換</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發表文 要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2년 3월 17일과 1992년 3월 19일, 2차례에 걸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 2. 1992년 3월 18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 교환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 4.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 하였다. <p>○ 참석대표 : 임동원(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공로명(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 |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18.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人員 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장 : 공로명(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부위원장 : 반기문(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 · 위 원 : 정대규(통일원 자문위원), 변종규(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부직(국방부 준장), 이승구(과학기술처 심의관), 홍석범(총리실 심의관) |
| <p>1992. 3. 18.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交流·協力 사업을 능률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으로는 ①互惠的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 실시 ②統一指向的 交流·協力推進 ③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탕위에서 교류·협력 실시 ④件別合意 即時實踐 등을 제시 ○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제21조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이산가족, 通行·通信,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 등 4개 분야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부속합의서에 맞춰 4개로 함. ○ 이산가족 문제의 切迫性을 고려, 이산가족 문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의 示範事業으로 '고령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우선적으로 실현시킬 것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및 규모 : 고향방문단,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 400~500명 - 방문시기 : 단오절(6. 5) 전후 5박 6일 - 방문지 : 이산가족들의 고향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3. 18. 정무원 총리 연 형묵, 대남전통 문</p> | <p>롭게 進行되어 나가고 있으며, 北南 사이에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곧 發足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合意書 履行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울 근거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 보아 附屬合意書들과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들을 7次會談前에 만들어내고,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남측은 북의 핵문제를 걸고 南北合意書 履行을 유보하려는 부당한 立場을 撤回하고 分科委員會에 성의를 다해 임해야 할 것임. | | |
| <p>1992. 3. 18.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1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人員 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 員 長 :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 副委員長 : 박광원(조선인민군 소장) · 委 員 : 김경춘(원자력공업부 국장), 장장천(외교부 순회대사), 김수길(외교부 순회대사), 최영관(조선인민군 대좌), 김만길(조평통 서기국 참사)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담에 임하는 자세로서 ①民族 自主的인 입장에 설 것(외세의존 배경) ②民族共同的 利益과 民族의 統一의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 설 것 ③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妥協하는 精神을 발양할 것 등을 提示 ○ 分科委員會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문제에 대한 見解로는 ①北南協力, 交流 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에 충실해야 하며 7次 高位級會談 前에 합의되도록 할 것 ②北南協力, 交流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合意書는 공동위는 經濟部門과 社會文化部門(非經濟)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 共同委 委員數는 각기 9명으로 할 것 ○ 協力·交流부문의 포괄적 附屬合意書(안) 1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제시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3. 19.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 차 회의(판문점, 통 일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內容調整을 위한 위원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 각기 위원 3명, 수행원 5명 · 일시 : 1992. 3. 25. 10:00 · 장소 :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18. 10: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임동원(공동위원장), 김인호(이하 위원), 송영대, 박운 서, 유득환, 신현웅, 박수창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의 최우선과제는 '南北共同發表文'에 따라 한 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을 조속히 채택하고, 6월 초순까지 제 1 차 相互査察을 개시해야 함. ○ 남북상호 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1. 10: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공로명(공동위원장), 반기문(공동부위원장), 정대규(이 하 위원), 변종규, 이부직, 이승구, 홍석범 | | |
| <p>1992. 3. 21. 林東源 南北交流 ·協力分科委員會 남측위원장, 대 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接觸委員 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김인호, 송영대, 신현웅 | | |
| <p>1992. 3. 25.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1</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交流·協力分科委員會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은 '南北基 本合意書' 및 '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3. 19. 핵통제공동위원 회 제 1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 <p>○ 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내용조정을 위한 위원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 위원각기 3명, 수행원 각기 5명 · 일시 : 1992. 3. 25. 10:00 · 장소 :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18. 10:00, 판문점 통일각 <p>○ 참석대표 : 김정우(공동위원장), 김채성(이하 위원), 손종철, 김이 순, 류창석, 정덕기, 김승국</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의 核不在宣言은 믿을 수 없으며, 美國이 核査察問題를 가지고 우리에게 威脅과 壓力을 가하고 있음. ○ 핵통제공동위원회의 機能 遂行原則으로 ① 自主的 立場에서 外勢排 擊 ② 完全無缺한 非核化 實現을 위해 全面的 同時 査察 ③ 非核化 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핵위협의 종국적 清算을 위해 외부로부터 의 核威脅에 대한 共同對處 ○ 附屬合意書와 合意書의 부록으로 사찰규정을 제시, 부속합의서 채 택후 사찰규정을 채택할 것을 주장 함.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1. 10 : 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최우진(공동위원장), 박광원(공동부위원장), 김경춘(이 하위원),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김만길 |
| <p>1992. 3. 21.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 김정우,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 協力, 交流分科委員會 接觸委員 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손종철, 김채성, 김승국 |
| <p>1992. 3. 25.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1</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차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회의시 제시했던 合意書(안)을 一部 修正 提示, 이 안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충실하고 있음. 南側案은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차 회의 제 1 차 위원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p>1992. 3. 27. 북남정치분과위 원회 제 2 차 회 의(판문점 통일 각)</p> | <p>基本合意書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共同委員會에 서 해야 할 實務的인 事項까지 包含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는 '南北基本合意書' 조항순에 따라 15조부터 하고(北側案 順 序), 이산가족 문제는 해당 조항 순서가 될 때 협의하면 될 것임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4. 2. 10 : 00, 판문점 중감위원 회의실 ○ 參席代表 : 손중철, 김채성, 김승국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안) 채택 후 '南北政治共同委' '南北連絡事務所' 設置, 運營 合意書를 채택한다는 基本立場 提示 함. ○ 南側 提示 '法律共同委'는 '政治共同委'를 구성하면 필요치 않음. ○ 連絡事務所는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고, 그 안에 細部的 機構는 둘 필요가 없으며, 연락사무소가 설치·운영되면 현재 赤十字連絡事務 所는 廢止해야 함. ○ 남측의 위원접촉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先 附屬合意書 討議, 後 共同委 및 連絡事務所 問題를 討議해야 함. (* 위원접촉 개최에 합의치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23.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백남준(공동위원장), 김완수, 조상호, 최성익, 정영춘, 심태진, 조성대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1992. 3. 31. 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 2 차 회 의(판문점 평화 의집) | 主要 發言 要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는 原則的·指針的이기보다는 구체적·실천적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合意·發效시키는 대로 실천해야 함. ○ 이행대책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각기 필요한 附屬合意書를 작성토록 해야함. 북한측의 포괄적 단일 附屬合意書 작성 주장은 分科委 構成·運營合意書 제 2 조 2항의 構文 解釋上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 ○ ‘軍事共同委員會’는 협의기구인 동시에 實踐機構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南北高位級會談 테두리 내의 기구임. ○ 軍事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일들의 優先順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南北基本合意書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키로 합의한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기한내에 發足해야 함 2.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를 위한 시급한 실천조치로서, 南北軍事 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운영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함. 3. 不可侵 分野의 여타 합의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逐次的으로 부속합의서로 채택해야 함. ○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武力使用·武力侵略 등 주요 용어의 정의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긴급조치 및 事後處理 문제 등 協議課題를 提示함. ○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合意書(안)’의 실무적 토의를 위한 위원접촉을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30. 10: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박용옥(공동위원장), 김희상(이하 위원), 임태순, 이영호, 김영진, 조상훈, 채준석 | | |
| 1992. 4. 1.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2 차 회의(판문점 평 | 主要 發言 要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회의에서 북측이 보인 會議에 대한 입장과 提案에 대한 문제점 및 不當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발생근원을 駐韓美軍 核武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賊反 | |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3. 31.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판문점 평화의 집)</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可侵에 관한 合意事項 이행과 군사분과위원회 運營過程에서 쌍방이 지켜야할 原則的 立場으로, 1. 民族의 念願에 맞게 南北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함. 2. 平和意志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平和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 있는 努力을 기울여야 함. 3. 낯은 對決觀念에서 脫皮해야 함. ○ 基本問題 討議와 關聯한 見解로서, 1. 불가침에 관한 附屬合意書 草案부터 條項別로 討議해야 하며, 2. 1차 회의시 의견이 접근된 '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 合意書'(안)을 討議하고, 3. '附屬合意書 作成時限'은 군사공동위 발족시한이 5월 19일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부속합의서는 그 이전에 作成되어야 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30. 10 : 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김영철(공동위원장), 박용수(이하 위원), 박성진, 리길청, 김민현, 박림수, 원동연 | | |
| <p>1992. 4. 1.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판문점 평</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이 核武器와 核基地의 사찰에 대해서 전혀 提及하지 않은 것은 이를 反對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며, ○ 1차 會議時 내놓은 사찰규정안은 非核化共同宣言에 대한 체면이나 | |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10.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1 차회의 제 3차 위원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分野 : 26개 조항에서 20개 조항으로 조정 - 社會文化分野 : 30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조정 - 通行·通信分野 : 23개 조항에서 17개조항으로 조정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4. 1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참석대표 : 김인호, 송영대, 신현웅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의 全分野에 걸쳐 쌍방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질토의를 완결한 후, 2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附屬合意書의 형식과 기타 주요 問題를 討議하고, 7차 본회담 이전까지 부속합의서의 내용, 형식을 모두 타결하여 假署名 할것을 제의 ○ 북측이 남측안중 경제 협력 당시에 대한 當局承認問題,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설치문제는 절대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대해, 책임있는 經濟活動을 위해서 당국간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經濟事務所 設置가 필요하다고 강조 ○ 참석대표 : 김인호, 송영대, 신현웅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6.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상무위원 여연구, 대남편지</p> | <p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3차 토론회 개최관련 이우정, 이효재 앞 대남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4. 1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參席代表 : 손종철, 김채성, 김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2차 토론회에서 합의한대로 제 3차 討論會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 몇가지 의견을 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날짜 : 4월말경 - 討論 議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국통일과 여성들의 과업(남측 과제) 2. 아시아에서의 비핵 평화운동과 여성들의 과업(일본측 과제) 3. 민족의 대단결과 여성들의 역할(북측 기초보고) - 代表團 構成 : 전례를(2차 토론회) 고려하여 결정 ○ 필요하다면 南北 女性代表들이 판문점에서 實務問題를 協議할 수 있음. |
| <p>1992. 4. 10.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 1차회의 제 3차 위원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차 위원접촉까지 쌍방이 意見을 接近시키지 못한 原因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雙方의 立場이 根本적으로 다르며, - 남측이 기본합의서에 준하여 條項別 履行 對策을 토의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위 소관인 細末의 事項을 분과위에서 토의하려 한데 있음. ○ 1차 위원접촉시 제시한 附屬合意書(안) 내용을 일부 修正하여 새로운(안) 提示함. ○ 參席代表 : 손종철, 김채성, 김승국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1992. 4. 13. 이우정 · 이효재 · 윤정옥 공동명 의, 대북서신 | <p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平壤討論會 관련 對北書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3차 토론회에 관한 南側實行委員會 논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제안한 4월말경 개최는 일본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9월초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一致된 의견임. - 討論主題는 귀하(*여연구)와 東京에서 교환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람. - 참석인원, 일정 등은 일본과 우리측 의견을 收斂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람. ○ 5월 말까지 위의 제안들에 대한 회신을 주면 일본과 우리측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
| 1992. 4. 18. 南北交流 · 協力 分科委員會 제 2 차 회의(판문점 통일각)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 · 協力分野에서 ‘經濟交流 · 協力當事者에 대한 當局 承認’은 南北政府當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또한 物資交流가 清算計定으로 처리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서울 · 평양 ‘경제사무소’ 설치문제는 추후협의키로 하되, ‘板門店 經濟相談所’는 우선 설치 · 운영해야 함. ○ 社會文化分野에서 남측안은 교류 · 협력의 구체성과 實踐性을 확보하기 위해 細部事項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北側案은 실천성이 결여된 宣言的인 案임. ○ 通行 · 通信分野의 북측안중 ‘各界各層 人원들의 왕래’의 표현을 ‘민족 구성원간의 왕래’로 수정해야 하며, 人的往來와 관련한 ‘法的 制度的 裝置 撤廢’ 주장은 상대방의 體制尊重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基本合意書 精神에 위배되는 것임. ○ 이산가족문제는 쌍방당국이 이산가족에 대한 解決對策을 마련하고, 그 이행에 따르는 사항은 雙方 赤十字團體가 담당토록 하는 折衷案을 제시함. ○ 부속합의서의 形式問題에 있어 기본합의서의 交流 · 協力分野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해당 附屬合意書 작성은 독립성을 지닌 조항은 이에 해당하는 合意書를 채택하되, 相互 聯關이 있는 조항들의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18.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2 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이 提示한 부속합의서안들은 基本合意書의 條項들을 뒤섞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細部化하여 인위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問題討議에 難關을 조성하고 있음. ○ 쌍방은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協力, 交流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問題’는 당국이 개입할 경우, 일방의 政略的 目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함. -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및 판문점 經濟相談所 設置問題’는 분열 지향적 색채가 농후한 제안이며, 기본합의서 토의시 ‘배격받은’ 常駐代表部 設置問題와 類似한 것임. - ‘法的·制度的 裝置 撤廢 問題’는 이를 그대로 두고 自由往來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임. - ‘이산가족문제’는 赤十字團體 주관하에 해결하고, 당국은 赤十字 會談 開催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 될 것임. ○ 남측은 사회문화부문 합의서 교류분야에서만 ‘民族共同體 回復, 發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러움.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21.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3 차 회의(판문점 통 일각)</p> | <p>사업은 묶어서 實踐對策을 마련할 것을 제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는 공동위는 協議機構가 아니고 실천기 구이므로, 교류·협력 진행시 제기되는 問題協議와 實行對策討議 결정은 분과위 所管事項임. ○ ‘高齡 離散家族 故鄉 訪問團’ 교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자고 재촉구. ○ 일부내용이 조정된 부속합의서 제 2 차 수정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分野 : 20개조에서 18개조로 재조정 - 社會文化分野 : 11개조 21개항에서 12개조로 조정 - 通行·通信分野 : 17개조에서 16개조로 조정 - 離散家族分野 : 10개조 18개항에서 11개조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27. 10: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임동원(공동위원장), 김인호(이하 위원), 송영대, 박운 서, 유득환, 신현용, 박수창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核統制共同委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에 따라 南北相互査察規程을 마련하고 檢證하는데 있는 것이며 비핵화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 채택은 타당치 않음. ○ 제 1 차 회의시 제기했던 사찰규정안을 일부 조정한 수정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명칭을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 규정’ (안)으로 수정 - 제 1 조에 ‘査察規程’ 목적 신설 - 제 2 조 1항 ‘用語 正義’ 수정 - 제 3 조 ‘査察對象’ 수정 - 제 7 조 2항 ‘情報交換’ 복측안 제11조 5항을 수용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21. 북남핵통제공동 위원회 제 3 차 회의(판문점 통 일각)</p> | <p>○ 제 3 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4. 27. 10: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김정우(공동위원장), 김채성(이하 위원), 손종철, 김이 순, 류창석, 정덕기, 김승국</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南側은 美國의 核武器·核基地를 사찰대상에서 제외하는가하면, 외 부의 핵위협에 加擔·共謀하고 있으며, 핵위협 방지에 공동대처하 자는 우리측 제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非核化共同 宣稱의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p> <p>○ 제 1 차 회의시 제기한 ‘공동선언 이행합의서’의 부록인 査察規程案 의 일부 내용을 修正한 새로운 사찰규정안을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 內容</p> <p>- 제11조 ‘핵시설에 대한 情報交換’ 규정 신설 - 제12조 ①, ②항 ‘사찰방법, 핵물질 사찰, 핵시설에 대한 사찰’ 조항 수정 - 제13조 ②항 ‘사찰의 진행’규정 수정 - 제15조 ③항 ‘사찰원 임명’규정 신설 - 제16조 ①항 ‘사찰의 기간과 주기’ 수정</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4. 23.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3次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8 조 '査察의 節次와 方法' 신설 및 복측안 수용 - 제 9 조 '査察團 身邊 및 活動 保障' 복측안 수용 - 제 11 조 '査察結果 및 是正措置' 복측안 수용 ○ 복측의 '疑心 同時 解消原則', '一方的인 全面査察'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관계와 그간 남북간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 차기회의 일자 및 장소 :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시 협의 ○ 참석대표 : 공로명(공동위원장), 반기문(공동부위원장), 정대규(이하 위원), 변종규, 이부직, 이승구, 홍승길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連絡事務所 設置 · 運營問題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고 시한이 5월 19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문제를 우선 논의하여 제 7 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를 발효시켜야 함. ○ 부속합의서의 채택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條項別, 事案別 중요도와 완급에 따라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 합의사항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해야 한다는 基本立場에 변함없음을 명백히 함. ○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해 달라는 복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南北基本合意書' 제 1 조에서 6조까지의 履行對策을 담은 부속합의서(안) 5건 제시함. <p style="text-align: center;">부속합의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 사이의 상호체제 인정 ·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의서'(안) 2. '남북 사이의 비방 · 중상 중지에 관한 합의서'(안) 3. '남북 사이의 파괴 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안) 4. '남북 사이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에 관한 합의서'(안) 5. '남북 사이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측이 '汎民聯' · '汎靑學聯' 結成, '汎民族大會' · '全民族政治協商會議' · '南北海外青年學生統一大祝祭'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蹂躪하고, 南北和解에 逆行하는 것임으로 場外 政治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23.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②항 '사찰장비와 수단'수정 - 제23조 '분쟁해결'조항 신설 등 ○ 남측 수정안은 제목만 바꾼 것으로, 비핵화의 중핵적 문제인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核基地가 아닌 軍事基地 査察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 차기회의 일자 및 장소 :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시 협의 ○ 참석대표 : 최우진(공동위원장), 박광원(공동부위원장), 김경춘(이하 위원),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김만길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차례 진행된 政治分科委員會 會議結果와 관련, 남측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측은 7·4共同聲明의 統一 3 原則을 왜곡하고 있음. 분열의 장본인인 駐韓美軍을 합리화 하려는 것은 外勢依存的인 思考方式으로 '自主의 原則'을 歪曲하는 것이며, 신신평구축을 구실로 평화문제의 根本問題인 軍縮을 회피하는 것은 '平和 統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또한 民族大團結問題를 이념문제와 결부시킴으로서 '民族 大團結'을 유린하고 있음. 2. 기본합의서의 '暫定的 特殊關係'를 실체인정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分裂指向的인 입장을 固守하고 있는 것임. ○ 包括的 單一附屬合意書를 우선 채택하고, 單一 共同委員會 構成·運營問題를 협의한 후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를 협의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附屬合意書 內容은 대체적 문제들만 포함하도록 하고 細部問題들은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해야 하며, - 連絡事務所를 상대측 지역에 두는 것은 분열지향적인 것이므로, 자기측 지역에 두고, 往來·接觸案内室 등 機構設置는 자기 편리한대로 하면 될 것임. ○ 1개 위원접촉을 갖고 부속합의서, 공동위 構成·運營, 連絡事務所 등의 問題를 순차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수락할 의사가 있으면 직통전화로 통보하라고 하고 회의를 종료할 것을 주장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宣傳攻勢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문제, 부속합의서 및 공동위원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개의 委員接觸을 가질 것을 提議함. ○ 참석대표 : 이동복(공동위원장), 민병석(이하 위원), 김달술, 최규학, 강근택, 신광옥, 신 정 |
| <p>1992. 4. 24. 유장희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장,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平壤 開催 동북아 경제포럼 參加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 開催 東北亞 경제포럼에 참가할 우리측 인원 18명의 板門店 通過節次와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 등 實務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1992. 4. 25.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에게) 제의 ○ 우리측은 우리측 대표단의 위임을 받은 판문점 연락관 2명을 파견할 것이며, 북측도 이에 相應한 措置를 기대함. |
| <p>1992. 4. 27.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3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資交流時 清算決濟 方式으로할 경우와, 經濟協力事業時 경제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책임있는 政府當局의 참여와 지원은 필수적임. ○ 북측이 주장하는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문제는 정치분과위에서 '南北法律共同委'를 구성하여 쌍방이 법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임. ○ 이산가족문제는 남측(안)이 기본합의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북측의 입장도 고려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타결지를 것을 요구함. ○ 부속합의서 수와 체제문제는, 1개의 부속합의서로 하되 몇개의 장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23. 汎靑學聯建設 조 선학생위원회 준 비위원회 위원장 문경덕,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차 北南·海外靑年學生 統一大祝典과 汎靑學聯 結成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 提議</p> <p>○ 參席代表 : 백남준(공동위원장), 김완수(이하 위원), 조상호, 최성 익, 정영춘, 심태진, 조성대</p> <p>○ 1992. 4. 28. 평양에서 제 2차 北南·海外靑年學生 統一大祝典과 汎靑學聯 結成을 위한 제 1차 實務會談을 가지기 위해 이에 참가 할 전대협대표 5~7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줄 것을 태재준 汎靑 學聯建設全國大學生代表者協議會 準備委員會 委員長에게 회망.</p> |
| <p>1992. 4. 24. 대의경제협력추 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平壤 開催 東北亞經濟포럼 參加 日本經由 入北해야</p> <p>○ 平壤 開催 東北亞 경제포럼은 日本, 美國과 共同 主催하는 會議인 만큼, 日本側과 합의한대로 南側代表團도 다른 나라 대표단과 함께 日本을 經由하여 入北해야 할 것임을 유장희 對外經濟政策研究院長 에게 通報</p> |
| <p>1992. 4. 27.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부속합의서는 1개로 하고, 南側 主張을 受容, 몇개의 章을 설정할 수 있음을 밝힘.</p> <p>○ '교류, 협력 당사자 當局 承認問題는 북남 사이의 자유로운 協力, 交流에 역행되기 때문에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南側 內部的으로 처 리하면 될 것임.</p> <p>○ 판문점 '經濟相談所', '資料交換室 設置問題는 공동위에서 討議할 문 제이며,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유 롭게 만나는 것을 犯罪視 하는 法은 당연히 撤廢해야 할 것임.</p> <p>○ 이산가족문제는 原則的인 問題만 當局間에 討議하고 具體的 對策은</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4. 28.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3 차 회의 제 1 차 위원집축(판문 점, 중감위회의 실)</p> | <p>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北側 見解를 유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회 수는 부문별 사업들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北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므로 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 3個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해 4. 28. 위원집축(위원 3명, 수행원 3명)을 가지기로 함. ○ 參席代表 : 임동원(공동위원장), 김인호(이하 위원), 송영대, 박운서, 유득환, 신현웅, 박수창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構成·運營合意書 조항별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위원장 각기 1명(장관급 또는 차관급), 부위원장 각기 1명(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위원 각기 7명(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수행원 각기 15명 - 機 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속합의서 이행 · 부속합의서 이행에 따른 세부합의서 작성 · 細部事項 協議, 實踐 · 실무협의회 활동 종합조정 - 會議 運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에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장소는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합의하는 장소 · 쌍방위원장 共同運營 · 非公開原則, 합의에 따라 交流·協力當事者, 해당 전문가 참가 ○ 未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 수 : 3개 구성 주장 - 이산가족문제 : 기본합의서 제18조에 해당하는 이행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점을 감안 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에 人道部門 履行은 적십자에 위임함을 명기 주장 - 協議結果 報告 : “위원장은 공동위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4. 28.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 제 1차 위원접촉(판문 점, 중감위원회의 실)</p> | <p>赤十字에서 討議하도록 하자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해 위원접촉(위원 3명, 수행원 3명)을 가지기로 합의. ○ 參席代表 : 김정우(공동위원장), 김채성(이하 위원), 손종철, 김이순, 류창석, 정덕기, 김승국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構成 · 運營合意書 條項別 討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合意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委員長 各기 1명(장관급 또는 차관급), 副委員長 各기 1명(級은 各기 平理한대로), 委員 各기 7名(級은 各기 平理한 대로), 수행원 各기 15명 - 機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에서 작성한 附屬合意書 履行 · 부속합의서 이행에 따른 細部合意書 作成 · 細部事項 협의, 實踐 · 실무협의회 활동 綜合調整 - 會議 運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分期에 1회 開催하되, 필요시 隨時 開催 · 場所는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合意하는 場所 · 쌍방위원장 共同運營 · 非公開原則, 합의에 따라 交流·協力當事者, 해당 전문가 참가 ○ 未合意 事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共同委 數 : 2개 구성 주장 - 이산가족문제 : 기본합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共同委가 없으므로 包含 不可 - 協議結果 報告 : 細末的인 사항을 總理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 - 發效 : 共同委員長 署名으로 充分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4. 29.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3次 회의 第1차 위원 접촉(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포함.</p> <p>－ 발효 :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重要文件은 쌍방 총리가 署名”한다는 내용 포함.</p> <p>○ 참석대표 : 김인호, 송영대, 신현웅</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기본합의서에 발족시한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가 容易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를 우선 토의한 후 부속합의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 토의 내용</p> <p>－ 合意書 題目 : ‘板門店’ 명시 불필요</p> <p>－ 名稱 : 남측, 북측으로 수정가능</p> <p>－ 設置 場所 : 판문점 상대측 지역에 설치</p> <p>－ 機能 : 정당, 단체, 개인별 인사간 연락 명시 불필요</p> <p>－ 機構 : 확대될 기능에 대비한 설치 필요</p> <p>－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問題를 쌍방 합의서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문안정리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부속합의서 수는 내용을 먼저 토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공동위원회 구성은 기본합의서에 규정이 없으므로 雙方協議結果에 따라 위원회 수를 조정해야 함.</p> <p>○ 參席代表 : 김달술, 강근택</p> | | |
| <p>1992. 4. 30. 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3次 회의(판문점, 통일</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에 있어 지켜야할 3가지 原則을 提示함.</p> <p>1. 當事者 解決原則 : 相對方과 제3자간의 관계를 부당하게 거론하</p>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4. 29.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제1차 위원 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 參席代表 : 손종철, 김채성, 김승국</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먼저 부속합의서를 토의하되, 종합적인 單一 附屬合意書로 하는데 합의한 후, 條項順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共同委 構成問題와 南北連絡事務所 設置問題를 협의해야 함.</p> <p>○ 남북연락사무소, 부속합의서, 공동위구성·운영 합의문제를 제7차 본회담에서 採擇, 發效시킨다는 입장을 전제로 南北連絡事務所 설치·운영문제 토의에 동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 토의 내용</p> <p>— 合意書 題目 : ‘판문점’ 明示 필요</p> <p>— 名稱 : 서울, 평양은 地理的 概念上 不適合</p> <p>— 設置 場所 : 판문점 相對側 地域에 設置 不可</p> <p>— 機能 :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 局限하기보다 폭넓게 範圍 設定</p> <p>— 설치시기 : 현단계에서는 불필요, 필요시 협의 설치 가능</p> <p>○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 토의에서 쌍방안의 差異點을 확인한 후 위원장에게 각기 報告토록하는 것이 좋겠음.</p> <p>○ 남측에 부속합의서를 하나의 綜合的 附屬合意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고, 綜合的 單一共同委員會의 구성을 주장함.</p> <p>○ 參席代表 : 김완수, 정영춘</p> |
| <p>1992. 4. 30.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판문점, 통일</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軍事分科委員會 회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提起되는 問題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p> <p>1.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각)</p> <p>1992. 5. 4. 김종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p> | <p>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止揚할 것.</p> <p>2. 均衡推進 原則 : 정치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相互信賴의 축적없이 군사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곤란함.</p> <p>3. 實踐性 保障 原則 : 실천의지를 宣言이 아닌 行動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p> <p>○ 제 2차 회의시 북측이 제시한 7개의 協議課題를 발전시킨 별도의 부속합의서(안) 제시</p> <p>○ '先共同委 問題討議, 後附屬合意書 討議'에 합의하고, 각기 제시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내용에 대해 條項別로 討議進行</p> <p style="text-align: center;">조항별 토의 내용 요약</p> <p>○ 構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행원 15명으로 합의</p> <p>○ 實務協議會 : 필요시 구성·운영</p> <p>○ 委員長의 級 : 階級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p> <p>○ 機能 : 남측의 ①~⑤항의 내용을 북측 2항 '기본합의서'의 제 2장 12조의 사항으로 대체 합의, 남측 ⑦항과 북측 ①, ②항의 질충 보류</p> <p>○ 運營 : 會議週期는 分期 1회 개최하되 쌍방의 합의로 수시개최가 능토록 하고, 회의장소는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로 함.</p> <p>○ 協議結果 報告 : 고위급회담에 보고기로 하자고 주장</p> <p>○ 署名 發效 : 합의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서명, 중요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발효로 수정 제외</p> <p>*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으나 쌍방안의 현격한 차이로 7차 고위급회담 이후 계속 折衷해 나가기로 하고, 會議終了</p> <p>○ 참석대표 : 박용욱(공동위원장), 김희상(이하 위원), 임태순, 이영호, 김영진, 조상호, 채준석</p> <p style="text-align: center;">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컵 인수 관련</p> <p>○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컵을 전달받기 위해 5월 6일 오후 3시 대한탁구협회 전무의 1명을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할</p>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순 대남전통문</p> <p>1992. 5.5~5.8. 제 7차 북남고위 급회담(서울, 신 라호텔)</p> | <p>넘겨주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 5월 6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북한 탁구협회 이사회 이사 외 1명을 파견할 예정임. 南側도 이에 相應한 措置를 취해주시기 바랍. <p style="text-align: center;">제 7차 南北高位級會談</p> <p style="text-align: center;">기본 발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회담 이후 各 分科委員會 協議過程을 평가하나, 부속합의서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부속합의서 작성이 분과위원회 기능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임. ‘一括合意, 同時實踐’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야 함. ○ 남측은 기본합의서 정신과 어긋나게 명백한 本質的 問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의 하나가 民族自主精神인 만큼 南側은 먼저 철저한 자주적 입장에 서야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對美關係를 再調整 함은 물론, 駐韓美軍을 撤收시켜야 함. - 남측이 相對方의 法秩序 尊重이라는 명분 밑에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民族的 和解精神과 相對方을 존중할 데 대한 合意事項에 충실하게 이를 폐지해야 함. - ‘窗口一元化’를 정당화하려 말고 各黨, 各派, 各界各層의 광범한 政治勢力과 인민들에게 統一聖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함. ○ 부속합의서는 分野別 單一合意書로 해야하고, 내용은 共同委員會 所管에 속하는 技術的인 問題까지 다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공동위원회는 構成時限이 있는 만큼 부속합의서도 그 期間內에 끝내야 할 것임. ○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작성해야 할 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附屬文件은 사찰규정만이 아니라 共同宣言 全般條項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核査察 對象도 駐韓美軍 核武器와 核基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特例事業으로, 8·15광복절을 계기로 ‘노부 | |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에 委任事項의 협의, 결정, 그밖에 제기되는 南北間 懸案問題 협의·해결</p> <p>－ 分科委員會 : 共同委 發足 이후에도 '南北基本合意書'의 구체적 이행대책중 미합의 사항, 새로이 제기되는 사항, 高位級會談 委任事項, 附屬合意書의 수정·보충 등 협의 기능을 계속 수행</p> <p>－ 共同委員會 :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의 實踐機構로서, 雙方 首席代表의 지도·조정·위임하에 高位級會談 合意事項의 실천 기능 수행</p> <p>○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합의방식과 실천방법은 '件別合意, 即時實踐'의 原則下에 하나씩하나씩 착실히 이행·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p> <p>○ 북측이 8·15를 계기로 '汎民族大會', '全民族政治協商會議 召集'등 정치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역행하고, 緊張을 造成하는 행위임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p> <p>○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인 南北相互査察이 6월초순경 실시될 수 있도록 사찰규정 마련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p> <p>○ 8·15를 전후 慶祝訪問團을 이산가족·각계인사·取材記者 등(300명)의 교환을 제의.</p> <p>○ 各 分科委員會, 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당면 懸案問題 해결을 위해 1일회의가 종료된 후 雙方 代表接觸 제의.</p> <p style="text-align: center;">代表 接觸</p> <p>○ 接觸 日時</p> <p>－ 1차 : 1992. 5. 6. 14:30~15:55</p> <p>－ 2차 : 1992. 5. 7. 08:00~09:30</p> <p>○ 場所 : 신라호텔 객실 2119호실</p> <p>○ 參席代表 : 임동원, 이동복</p> <p>○ 經過 : 쌍방은 2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共同發表文을 작성, 2일 회의에서 보고, 발표키로 합의</p> <p>○ 合意 事項</p> <p>1. '南北 基本合意書' 화해분야의 履行機構를 구성키로 합의</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① ‘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p> <p>②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수의 實務協議會를 설치</p> <p>③ 제 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작성 및 和解共同委員會의 발족</p> <p>2. 1992. 5. 18.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 등 3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 명단 상호통보.</p> <p>3. 1992. 5. 18.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 상호 통보 및 운영 개시</p> <p>4. ‘不可侵’, ‘交流·協力’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합의</p> <p>①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1. 까지</p> <p>② 교류·협력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5. 까지</p> <p>5. 금년 8·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 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 실시를 적십자단체에 위임</p> <p>6. 각 분과위원회, 核統制共同委員會 차기회의 날짜합의</p> <p>① 제 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 1992. 5. 12.</p> <p>② 제 4차 정치분과위원회 : 1992. 5. 19.</p> <p>③ 제 4차 군사분과위원회 : 1992. 5. 25.</p> <p>④ 제 4차 교류협력분과위원회 : 1992. 5. 30.</p> <p>7. 제 8차 남북고위급회담개최 : 1992. 9. 15.~18. 평양</p> <p>* 쌍방은 대표접촉을 토대로 분야별 분과위원장 접촉을 갖고, 군사공동위원회,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및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文案整理를 끝 마침.</p> <p style="text-align: center;">政治分科委員長 接觸</p> <p>○ 일시 : 1992. 5. 6. 16:00~18:00</p> <p>○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2호실</p> <p>○ 참석대표 : 이동복 위원장, 김달술 위원</p> <p>○ 합의사항 : 연락사무소 設置의 件</p> <p style="padding-left: 2em;">- 명칭 : 남측 연락사무소</p> <p style="padding-left: 2em;">- 설치장소 : 판문점 共同警備區域內 자기측 지역</p>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① ‘北南和解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p> <p>②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수의 實務協議會를 설치</p> <p>③ 제 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작성 및 화해공동위원회의 발족</p> <p>2. 1992. 5. 18. 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 등 3개 共同委員會의 構成 및 구성원 명단 相互通報</p> <p>3. 1992. 5. 18. 北南連絡事務所 구성원 명단 상호 통보 및 운영 개시</p> <p>4. ‘不可侵’, ‘交流·協力’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합의</p> <p>①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1. 까지</p> <p>② 교류·협력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5. 까지</p> <p>5. 금년 8·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同時交換 실사를 赤十字團體에 위임</p> <p>6. 各 分科委員會, 核統制共同委員會 次期會議 날짜合意</p> <p>① 제 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 1992. 5. 12.</p> <p>② 제 4차 정치분과위원회 : 1992. 5. 19.</p> <p>③ 제 4차 군사분과위원회 : 1992. 5. 25.</p> <p>④ 제 4차 교류협력분과위원회 : 1992. 5. 30.</p> <p>7. 제 8차 北南高位級會談 개최 : 1992. 9. 15.~18. 평양</p> <p>* 쌍방은 대표접촉을 토대로 分野別 分科委員長 接觸을 갖고, 군사공동위원회,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및 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합의서의 文案整理를 끝마침.</p> <p style="text-align: center;">政治分科委員長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2. 5. 6. 16:00~18:00 ○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2호실 ○ 참석대표 : 백남준 위원장, 최성익 위원 ○ 합의사항 : 連絡事務所 設置의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北側 連絡事務所 - 설치장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자기측 지역 |

| 南 | | 韓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소장(국장급) 1명, 부소장 1명, 필요한 수의 연락관 - 必要部署 設置 : 쌍방 합의시 - 기능 : 위임 · 의뢰되는 연락업무 수행, 합의사항 이행관련한 실무 협의, 왕래 ·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제공, 連絡事務所 長間 전화 가설 운용 - 운영 : 소장회의 수시개최, 연락 접촉,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일요일 · 雙方公休日은 休務, 필요시 운영날짜 · 시간조절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分科委員長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2. 5. 6. 16:00~5. 7. 06:00 ○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4호실 ○ 참석대표 : 박용욱 위원장, 임태순 위원 ○ 합의사항 :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위원장(차관급 이상)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행원 15명으로 하되 조정가능, 필요시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 기능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具體的 實踐對策 협의와 필요한 합의서 작성 · 실천 · 확인 · 감독 - 운영 : 분기 1회 개최원칙(필요시 수시), 판문점 · 서울 · 평양 등의 장소에서 개최, 회의 : 非公開(합의시 공개) - 발효 : 공동위원장 서명발효, 중요문건은 공동위원장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발효 <p style="text-align: center;">交流 · 協力分科委員長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2. 5. 6. 16:00~19:00 ○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6호실 ○ 참석대표 : 임동원 위원장, 송영대 위원 ○ 합의사항 : 共同委 構成 運營의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 명칭 및 수 : 남북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남북 사회문화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2개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소장(국장급) 1명, 부소장 1명, 필요한 수의 연락관 - 必要部署 設置 : 쌍방 합의시 - 機能 : 委任 · 依賴되는 連絡業務 遂行, 합의사항 이행관련한 실무 협의, 왕래 · 접촉에 따르는 案內와 便宜提供, 連絡事務所 長間 전화 가설 운용 - 運營 : 所長會議 隨時開催, 연락 접촉,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일요일. 쌍방공휴일은 休務, 필요시 운영날짜. 시간조절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分科委員長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2. 5. 6. 16:00~5. 7. 06:00 ○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4호실 ○ 참석대표 : 김영철 위원장, 원동연 위원 ○ 합의사항 :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위원장(차관급 이상)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행원 15명으로 하되 調整可能, 필요시 實務協議會 구성 · 운영 - 機能 : 불가침의 履行과 遵守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實踐對策 협의와 필요한 합의서 작성 · 실천 · 확인 · 감독 - 運營 : 분기 1회 개최원칙(필요시 수시), 판문점 · 평양 · 서울 등의 장소에서 개최, 회의 : 비공개(합의시 공개) - 發效 : 공동위원장 서명발효, 중요문건은 공동위원장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발효 <p style="text-align: center;">協力, 交流分科委員長 接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2. 5. 6. 16:00~19:00 ○ 장소 : 신라호텔 객실 1906호실 ○ 참석대표 : 최우진 위원장, 김채성 위원 ○ 합의사항 : 공동위 구성 운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 명칭 및 수 : 북남경제교류 · 협력공동위원회,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 2개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12. 제 4 차 南北核統 制共同委員會 會 議 (판문점 평화 의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위원장(장·차관급)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수행원 15명(필요시 조정) - 기능 : 부속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 세부합의서 작성 - 운영 : 회의 분기 1회 개최(필요시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 비공개회의 원칙(합의서 공개), 판문점·서울·평양 합의하는 장소에서 합의 개최, 회의 공동운영 - 발효 : 공동위원장 서명으로 발효, 중요문건은 총리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 발효 <p>* 1992. 5. 7. 제 2일 회의에서 남북의 분야별 분과위원장들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각각 낭독하고, 이를 쌍방총리가 서명 교환</p> <p>참석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鄭元植(국무총리) · 대 표 : 金宗輝(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宋膺燮(합참제 1차장), 林東源(통일원 차관), 孔魯明(외교안보연구원장), 李東馥(국무총리 특별보좌관), 朴庸玉(국방부 군비통제관)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檢證에 필요한 文件은 남북 상호 사찰 규정이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가 아님. ○ 상호주의가 존중되는 전제하에 南側 査察規程(안)중 제 3조(사찰 대상과 목적)와 제 7조(정보교환 대상)에 핵무기, 핵폭발 장치, 핵무기발사 및 運搬手段의 존재 여부를 사찰할 수 있다고 명기한 修正案을 提示함. ○ 핵무기, 핵기지 사찰을 진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느 일방이 사찰대상을 지정할 때 相對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하는 '特別査察'제도가 필요함.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12. 제 4 차 북남핵통 제공동위원회 회 의(관문점 평화 의 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委員長(장·차관급) 1명, 副委員長 1명, 위원 7명, 수행원 15명(필요시 조정) - 機能 : 부속합의서 履行, 實踐을 위한 細部合意書 作成 - 運營 : 회의 분기 1회 개최(필요시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 非公開會議 原則(합의시 공개), 판문점·평양·서울 합의하는 장소에서 협의 개최, 회의 共同運營 - 發效 : 共同委員長 署名으로 발효, 重要文件은 總理 署名後 필요 절차 거쳐 발효 <p>* 1992. 5. 7. 제2일 회의에서 북남의 分野別 分科委員長들이 '북남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남협력, 교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北南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각각 낭독하고, 이를 雙方總理가 署名 交換</p> <p style="text-align: center;">참석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대표 : 연형목(정무원 총리) · 대 표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장), 백남준(조평통 서기국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공동선언과 核統制共同委 構成·運營合意書を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履行合意書を 반드시 採擇해야 함. ○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과 査察對象의 選定, 査察節次·方法을 핵시설·핵물질과 구분하여 명백히 규정해야 함. ○ 軍事基地査察 문제는 인위적인 난관조성이며, '特別査察'은 공동선언 4항에 대한 위반이고, '相互同數査察'은 구체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疑心同時解消 原則' 세워야 함. ○ 履行合意書와 사찰규정을 一括合意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에 대한 실무토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갈 것을 제외함. |

| 出 處 | 北 韓 |
|---|---|
| <p>1992. 5. 12.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문경덕, 대남전통문</p> | <p>○ 合意事項 - 차기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1992. 5. 27. 10:00, 판문점 통일각 - 위원접촉 일시 : 1992. 5. 15.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參席代表 : 최우진(공동위원장), 박광원(공동부위원장), 김경춘(이하 위원),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김만길</p> <p>조선학생위원회 '5월 광주 성지 순례단' 파견 관련, 최호중 통일원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 요지</p> <p>○ 조선학생위원회와 '光州 全南地域 總學生會聯合'(南總聯)은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5월광주민중항쟁' 추모행사를 함께 하기로 합의, 추진하여 왔음.</p> <p>○ 이에 따라 조선학생위원회 '5월 광주 성지순례단' 500명이 5월 15일 11:00 판문점을 통과 南側에 들어가게 됨.</p> <p>○ 이와 관련 귀측에서 조선학생위원회 '5월 광주 성지순례단' 成員들의 身邊安全擔保와 必要한 文件을 넘겨주기 바람.</p> |
| <p>1992. 5. 12. 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책임연락 원 최봉춘, 대남 전통문</p> | <p>제 7차 北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皮膚炎 發生原因 解明要求</p> <p>○ 제 7차 北南高位級會談을 위하여 서울에 갔던 성원 13명이 알레르기성 皮膚炎이 발생함.</p> <p>○ 이 병의 발생원인은 알레르기성 항원물질이 들어있는 清涼飲料나 飲食物을 섭취한데 있는 것으로 확증됨.</p> <p>○ 우리측 성원이 서울에서 알레르기성 皮膚炎에 걸리게 된 原因을 해명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함.</p>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13. 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전통문</p> | <p>는 바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없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에서 환자들에 대한 검진결과와 醫療陣의 所見書를 통보해 준다면, 이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p style="text-align: center;">‘5월 광주성지 순례단’ 파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전화통지문으로 제기한 이른바 ‘5월 광주성지순례단’ 파견 문제는, 當局間에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는 우리측 政府當局의 立場을 전달함. | | |
| <p>1992. 5. 13. 孔魯明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남측위원장,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핵통제공동위 위원접촉 참가위원 명단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반기문, 정대규, 이승구 ○ 수행원 : 6명 ○ 북측에 이에 상응한 조치 요망 | | |
| <p>1992. 5. 13. 김용환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위 구성문제 관련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공동위원회 구성문제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5월 15일 10:00 책임연락관 접촉을 제의함.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14. 북남핵통제공동 위원회 북측 위 원장 최우진,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委員接觸 人員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 박광원, 장장천, 김수길 ○ 수원 : 3명 |
| <p>1992. 5. 14.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책임연락원 최봉춘,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構成問題 關聯 責任連絡員 接觸提議 回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남공동위원회들의 구성문제를 비롯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5월 15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나갈 것임을 알림.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5. 15.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4 차 회의 제 1 차 위 원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접촉의 운영문제는 제 4 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查察規程과 이행합의서 문제를 順次的으로 토의키로 합의 했으므로, 이번 위원 접촉은 우선 사찰규정을 討議해야 할 것임. ○ 사찰규정은 현재의 핵무기 存在與否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생산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제 하려는 데 焦點이 맞춰져야 하며, 1回性에 그치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 ○ 핵무기나 핵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사찰규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어떤 대상에 한정된 규정은 해당조항에 별도로 규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別途의 章 편성은 불필요함. ○ 차기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5. 20.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參席代表 : 반기문, 정대규, 이승구 |
| <p>1992. 5. 18. 鄭元植 국무총 리, 대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員會, 連絡事務所 構成人員 名單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軍事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송응섭(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부위원장 : 천용택(국방부 중장) ● 위원 : 박용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희상(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박응회(통일원 국장), 임상호(국방부 대령), 함춘추(총리실 심의관)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한갑수(경제기획원 차관) ● 부위원장 : 김인호(경제기획원 실장) ● 위원 : 박운서(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 호(통일원 국장), 이환균(재무부 차관보), 유득환(상공부 차관보), 최 훈(교통부 실장), 이계철(체신부 실장), 김창수(총리실 심의관)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15. 북남핵통제공동 위 제 4 차 회의 제 1 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접촉 운영은, 제 4 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委員長間에 쌍방의 履行合意書와 査察規程의 일괄채택을 합의했으므로, 2件을 並行 討議 해야함. ○ 사찰규정 명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이라고 하고, 內容體系는 남북의 객관적 상황에 맞춰 핵무기·핵기지에 관한 사찰규정을 別途의 章으로 편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 차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5. 20.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參席代表 : 박광원, 장장천, 김수길 |
| <p>1992. 5. 18. 정무원총리 연형 목,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 連絡事務所 成員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차수) • 부위원장 : 오룡방(조선인민군 소장) • 위원 : 김영철(조선인민군 소장), 박용수(조선인민군 소장), 박성진(조선인민군 소장), 김민현(조선인민군 대좌), 원동연(조평통 서기국 부장)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經濟協力, 交流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 부위원장 : 박종명(무역부 국장) • 위원 :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채성(정무원 사무국 부장), 오창식(자원개발부 국장), 류창석(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김춘단(대외경제사업부 부국장), 김명호(체신부 부국장), 김령성(조평통 서기국 참사)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19.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4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임동원(통일원 차관) ● 부위원장 : 한병삼(문화부 중앙박물관장) ● 위원 : 김병호(총리실 심의관), 박상찬(통일원 국장), 김진성(교육부 장학관), 조영승(체육청소년부 실장), 송재성(보건사회부 협력관), 성낙승(공보처 실장), 박수창(총리실 심의관)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事務所(南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손인교(통일원 부장) ● 부소장 : 김태학(총리실 심의관) ● 연락관 : 정용채, 문만삼, 김연철, 오세웅, 김삼경, 박성규, 김상엽, 송명호, 정호방, 이영진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討議는 먼저 南北和解分野 履行對策을 협의·해결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의 順으로 진행해야 함. ○ ‘一括合意, 同時實踐’을 앞세워 합의사항 실천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것은 실천에 옮기는 ‘件別合意, 即刻實踐’원칙을 준수해야 함. ○ 복수 부속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3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5건 부속합의를 하나의 ‘章’으로 통합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제시 ○ 부속합의서부터 合意·解決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協議·解決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構成 :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필요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機能 : 화해분야 해당부문의 부속합의서 이행 - 合意事項 發效 : 쌍방 총리 署名交換으로 發效, 重要 文件은 쌍방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5. 19.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 4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北南社會文化協力, 交流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김철식(사회과학원 제 1 부원장) • 부위원장 : 허혁필(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 위 원 : 홍일천(김형직사범대학 학장, 여), 김승국(로동청년사 부주필), 채량일(교육위원회 국장), 김이순(문화예술부 국장), 장관학(보건부 국장), 리영일(평양출판사 부장), 라봉만(국가체육위원회 부국장) <p>北南連絡事務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최봉춘(총리보좌원 겸 북남고위급회담 책임연락원) • 부소장 : 김광수(조평통 서기국 참사) • 연락대표 : 박시남, 리학수, 리춘복, 박철민, 리용철, 문창호, 김하영, 리길남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회의에서 협의·해결할 가장 重要한 問題는 부속합의서의 作成이므로 부속합의서의 形式은 包括的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하고, 내용구성은 ‘基本合意書’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맞게 되어야 함. ○ 남측이 3차 회의시 제시한 附屬合意書(안)의 일부내용을 수용한 附屬合意書 수정(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법질서 존중(1조 2항):신설 • 상대방 對外關係 不干涉(2조 2항):신설 •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는 誹謗·中傷의 대상에서 제외(3조 4항):신설 • 事實歪曲 및 허위사실 造作·流布 禁止(3조 3항):추가보완 • 상대방을 破壞·顛覆하려는 外部勢力이나 집단 的 行爲에 불가담(4조 3항):신설 • 現 停戰狀態를 公告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爲해 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을 誠實히 履行·遵守(5조 2항):신설 •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民族의 존엄을 지키기 爲해 緊密히 협조(6조 1항):신설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20. 李東勳 남북고위 급회담 남측대표 단 대변인,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총리 서명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逐條討議를 進行하여 원칙적 차원에서 상호 입장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 위원접촉을 통해 文案整理에 들어갈 것을 제의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9. 10: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이동복(공동위원장), 민병석(이하 위원), 김달술, 최규학, 강근택, 신광옥, 신 정 <p style="text-align: center;">人共旗 事件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이 제기한 우리내부의 일부학생의 돌발적 사건은 우리 法秩序에 명백히 위배됨은 물론, 남북간에 마련된 화해와 團合의 霧圍氣를 해치는 일로 우리국민 감정이 용납치 않고 있음. ○ 그러나 귀측은 報道媒體를 통해 이를 統一意志의 發顯으로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公權力 발동을 탄압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선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19.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안병수, 대남전통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共同利益 도모를 위해 海外代表部가 있는 지역에서 公館長間 협의(6조 4항):신설 ○ 7차 본회담에서 쌍방이 '하나의 화해공동위원회를 내오기로 합의'하고, 和解共同委 구성·운영 합의서의 內容調整이나 文案整理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므로 우선 부속합의서 문제를 集中 協議·解決해야 한다고 주장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9. 10:00, 판문점 평화의 집 ○ 참석대표 : 백남준(공동위원장), 김완수(이하 위원), 조상호, 최성익, 정영춘, 심태진, 조성대 <p style="text-align: center;">人共旗 團束 관련 對南電通文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남조선 대학생들이 남조선과 美國, 共和國 깃발을 揭揚하고 校內行事를 진행한 것은 오늘의 새로운 情勢에 맞게 民族的 和解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 統一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임. ○ 그러나 귀측 당국은 청년학생들의 이 의로운 소행을 오히려 犯罪視하고 탄압하면서, "북은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이지만 법차원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등 共和國을 冒瀆하고 있음. ○ 이러한 귀측당국의 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언행은 和解와 不可侵을 선언하고, 교류할 것을 확약한 貴側의 眞意를 의심케하는 것으로 嚴重警告와 함께,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 앞으로 貴側當局이 보안법을 적용하여 青年學生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全的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5. 20.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4 차 회의 제 2 차 위 원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 <p>동행위를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같은 귀측의 태도는 남북간의 歷史的 文件인 기본합의서에 損傷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전적으로 귀측에 책임이 있음을 警告해 두는 바임.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를 번갈아가며 토의해야한다는 北側主張은 不可能한 억지주장임. ※ 사찰규정(안)을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제 2조②항에서 ⑦항까지 項目順序대로 再整理한 對比表를 제시 ○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기지와 민간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함. 어느 한쪽에만 義務를 지우는 북측 査察規定(안)은 부당한 것임. ○ 日·北修交會談 北側代表와 Hans Blix 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의 기자회견에서 존재가 확인된 북측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함. 核再處理施設 保有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 3항에 대한 위반이므로,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면 즉각 中斷할 것을 촉구함. ○ 차기접촉에서는 사찰규정 토의를 완료한 후 이행합의서를 토의하는데 동의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라도 접촉을 계속 할것을 제의함. ○ 차기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5. 23.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參席代表 : 반기문, 정대규, 이승구 |
| <p>1992. 5. 23.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4 차회 의 제 3 차 위 원접촉(판문점 중 감위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보가 제공된 핵물질·핵시설’에 대해서는 定期査察,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핵기지와 關聯情報가 제공되지 않는 핵물질·핵시설에 대해서는 特別査察을 해야함. ○ 相互主義原則과 관련 사찰횟수 및 기간에 대한 북측 사찰규정(안) 제16조 ①항은 애매하고 막연한 규정임. 연간 사찰횟수 및 사찰대상 최대치를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20. 북남핵통제공동 위 제 4 차회의 제 2 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는 不可分離의 것이며, ‘一括討議’와 ‘順次討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므로 査察規程 토의진행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행합의서로 되돌아가서 檢討하는 과정을 밟아 兩文件을 一括 採擇해야함. ○ 남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同數査察을 재강조한 것은 委員接觸의 부진에 대한 責任轉嫁를 목적으로한 계획적 도발임. ○ 남측이 우리측 核再處理施設에 대한 해명요구는 挑發이며, 비방증상이고 이행합의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非核化共同宣言의 履行의지가 없는 것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차 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5. 3.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참석대표 : 박광원, 장장천, 김수길 | | |
| <p>1992. 5. 23. 북남핵통제공동 위 제 4 차회의 제 3 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主要 發言 要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이행합의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核査察의 실천의지가 없는 것이며, 內外輿論을 誤導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임. ○ ‘一括妥結’은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엮바꾸어 討議하고, 一括合意하여 同時에 發效시키는 것이며, ‘順次討議’란 원래 이행합의서를 토의한뒤 사찰규정을 토의하는 것으로, 이것이 비핵화공동선언의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25.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4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사찰을 실시하면 相互主義는 충족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규정의 체제문제는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므로 이를 뒤로 미루고,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제 2조에 규정된 사찰규정 關係條項의 순서에 따라 내용부터 討議해야함. ○ 參席代表 : 반기문, 정대규, 이승구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제시한 2개의 부속합의서를 하나로 묶은 '남북 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 불사용 및 偶發的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장(총칙), 제 1조~제 3조 : 不可侵 관련 用語 定義, 정의된 용어의 준수 규정 - 제 2 장, (우발적 무력충돌의 방지)제 4조~제 5조 : 우발적 무력충돌의 사전 예방 조치 규정 - 제 3 장, (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 방지), 제 6조~제 8조 : 우발적 침범 발생시 무력충돌이 발생·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措置 規定 - 제 4 장, (긴급 및 사후조치), 제 9조~제 11조 :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이의 확대방지 및 平和的 解決을 위해 긴급히 조치할 공동위기관리 사항과 事後措置事項 규정 - 제 5 장, (군사 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 12조~제 19조 : 남북 기본합의서 제 13조에 따른 원칙 합의가 이루어진 事項으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細部事項을 제시 - 제 6 장,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제 20조 : 남북 기본합의서 제 14조와 관련, 不可侵의 履行·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군사분과위가 계속 협의·해결할 것을 명시 - 제 7 장, (修正 및 發效), 제 21조~제 22조 :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署名 후 발효절차를 거쳐 文本을 교환 | |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25. 북남군사분과위 제 4차 회의(판 문점 평화의 집)</p> | <p>根本要求이지만 오늘은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사찰규정(안)은 核武器·核基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조건에서 독립된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半製品이며 ‘相互主義 同數査察’은 言語道斷임. ‘特別査察’은 ‘非核化共同宣言’의 제 4조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고, 사찰대상의 갯수 등은 현실을 무시한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임. ○ 참석대표 : 박광원, 장장천, 김수길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합의서 작성에 있어, 형식은 기본합의서 ‘第 2章 南北不可侵’의 모든 조항들을 包括的으로 담아 單一하게 만들어야 하고, 내용은 불가침 이행·준수를 위해 명백히 규정해야 하되, 앞으로 共同委가 作成하게 될 施行細則이나 세부합의서와도 區別되어야 함. ○ 부속합의서 수정(안)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측 지역으로 드나드는 제 3국의 인원, 선박, 함선, 비행기를 攻撃하거나 그 進路를 방해하는 行爲禁止” ⑤항에 삽입 - 제 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然災害나 航路迷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管轄區域 侵犯時 상대측에 긴급확인 후 歸還措置”條項 新設 · “쌍방 합의 위반시 調査進行 및 재발방지 對策講究” 조항 신설 - 제 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直通電話設置·運營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합의서 발효 후 쌍방 통신실무자 接觸에서 협의·해결”조항 新設 ○ ‘5. 22. 무장병력침투사건’과 관련, 北의 武裝勢力이 黨의 統一政策에 違背되는 行動을 할 리가 없음. 이 사건은 軍事分科委 會談外的 問題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정중히 제의함.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27.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5차 회의(판문점 통 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한 날부터 效力 發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22. 북측무장병력이 침투하여 敵對行爲를 한 사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행위임, 북측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軍事停戰委를 통한 철저한 真相 糾明을 해야할 것임. ○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19. 10: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박용옥(공동위원장), 김희상(이하 위원), 임태순, 이영호, 김영진, 조상훈, 채준석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규정체제는, 북측이 주장하는 '핵물질·핵시설 사찰'과 '핵무기·핵기지 사찰'로 分類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제공된 핵물질·핵시설에 대한 '定期査察'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핵물질·핵시설,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特別査察'로 구분해야 함. ○ 어느 한쪽의 특정대상만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식의 獨斷的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성에 입각하여 年間査察 횟수 및 장소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持續的으로 사찰을 실시해야만 非核化 體系가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제 7차 고위급회담에서 늦어도 5월말까지 사찰규정을 마련키로 쌍방이 다짐 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文案整理를 위한 위원접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찰규정의 構成體系를 비롯한 基本問題를 충분히 討議·解決해야함. ○ 사찰규정을 우선토의하여 가서명 한 후, 이행합의서에 해당하는 문건을 제시하겠음. 쌍방이 合意時限 內에 사찰규정을 마련키 위해 차기회의를 5월 29일 개최하자고 제의함. (* 차기회의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연락하기로 하고 회의종료) ○ 參席代表 : 공로명(공동위원장), 반기문(공동부위원장), 정대규(이하 위원), 변종규, 이부직, 이승구, 홍승길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27. 북남 핵통제공동 위 제5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19.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김영철(공동위원장), 박응수(이하 위원), 박성진, 리길청, 김민현, 박립수, 원동연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履行合意書' 초안도 내놓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합의서 토의는 물론, 韓半島 非核化 自體를 부정하는 것임. ○ '相互主義原則'은 사찰규정 토의자체를 무산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特別査察'과 '軍事基地 査察'은 그 어떤 군사적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임으로 이러한 주장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음. ○ 사찰규정 체계는 핵무기·핵기지, 핵물질·핵시설과 그형태, 성격, 利用目的이 서로 다름으로 독립된 章으로 편성 해야함. ○ 남측이 이행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은한 만나봐야 의미가 없음. IAEA사찰이 進行中임으로 차기회의를 6월 16일에 갖일 것을 제의함. ○ 參席代表 : 최우진(공동위원장), 박광원(공동부위원장), 김경춘(이하 위원),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김만길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5. 30. 南北 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4 차 회의(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當局承認’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교류・협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資金動員能力, 관련사업의 경험 등을 綜合的으로 判斷, 適正事業者를 선정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책임과 信賴性을 제고 시키려는 것이 기본 취지임. ○ 북이 ‘法的 制度的 裝置 撤廢’를 주장하나,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체제 및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 교통로 개설을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연계시키는 것은, 교통로 개설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제 4차 위원접촉시 부속합의서(안) 일부를 조정한 수정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通行・通信의 이행을 경제와 사회문화 공동위에서 나누어 하되 부속합의서에는 ‘通行・通信’을 별도의 ‘章’으로 편성. - 경제상담소, 자료교환실 설치는 공동위에서 구체적 명칭과 구성, 설치 시기를 협의하도록 意見接近을 보았으므로 이를 부속합의서에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相談所 : ‘경제교류와 협력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제13조) ・ 資料交換室 : 자료교환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제13조)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5. 28.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노부모 방문단 교환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차 北南高位級會談에서 쌍방은 8·15를 계기로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동시 교환기로 합의하고 赤十字團體들이 맡아 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雙方 赤十字 實務接觸을 1992. 6. 6. 10:00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우리는 이날 실무대표 접촉에 2명의 대표를 파견할 것임. |
| <p>1992. 5. 30.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 4차 회의(판문점 중감위원회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去來 當事者를 當局의 承認을 받은 자로 규제하는 것은 基本合意書 精神에 背馳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經濟協力, 交流가 다른 目的에 利用될 수 있기 때문에 不當하고, 當局의 支援保障問題와는 別개의 문제임. ○ 군사분계선에 있는 콘크리트장벽 등 군사적 구조물과 폭발물이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道路나 기차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하며, ○ 民族構成員들의 自由로운 往來·接觸問題 해결은 협력, 교류분과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法的·制度的 障礙撤廢'문제를 부속합의서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政治分科委에서 토론하도록 하자는 主張은 不當함. ○ 부속합의서 수정안 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修正案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조 ⑤항의 “물자교류는 제품 대 제품, 원료 대 원료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를, “物資交流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로 修正 - 제 1조 ⑩항 경제협력 당사자를 ‘경우에 따라 個人’을 추가 - 제 3조 ④항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 등 實務的 問題들을 협의하는 주체를 ‘共同委員會가 지정하는 쌍방 당사자들’에서 ‘共同委員會’로 수정 - 제 6조 “북과 남은 經濟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支援 保障한다.”는 조항 신설 등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1.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전통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과 관련,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전원이 가족, 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과, 藝術人·支援人員·記者中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에게도 혈액상봉의 편의와 기회를 提供해줄 것을 쌍방이 추가로 합의할 것을 제의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26. 10:00, 판문점 평화의집 ○ 參席代表 : 임동원(공동위원장), 송영대(이하 위원) 박운서, 신현웅, 박수창 * 김인호, 유득환 위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 <p style="text-align: center;">核査察 會談 誠意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 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韓半島의 非核化를 檢證하는데 필요한 文件을 채택하고, 그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5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와 3차례의 위원접촉을 개최, 相互査察規程을 채택하기 위한 論議를 진행해 왔음. ○ 그러나 귀측은 한반도 核問題의 현실을 歪曲하고 스스로 철회 하였던 非核地帶論을 다시 주장 하면서 사찰규정의 논의 조차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非核化 共同宣言’의 기본정신을 외면, 상호사찰의 기본요소인 특별사찰제도와 對稱性에 입각한 상호주의를 거부하는가 하면, ○ 지난 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측이 5월말까지 사찰규정 마련을 위해 쌍방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귀측은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할 시점인 6월 16일에 次期會議를 개최 하라고 주장하여 6차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였음. ○ 귀측에 대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위해 국제핵사찰과는 별도로 南北相互査察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 ○ 귀측은, 南北相互査察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實質的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認識하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해 올 것을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6. 26. 10:00, 판문점 평화의 집 ○ 참석대표 : 김정우(공동위원장), 김채성(이하 위원), 손종철, 김이 순, 류창석, 정덕기, 김승국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1. 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촉구하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노부모방문단교환 관련 적십자 實務代表接觸 일자 修正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적십자에서 實務代表接觸 일자로 제의한 6월 6일은 우리측의 현충일인 관계로, 동 접촉을 1992. 6. 5.로 수정제의함. ○ 이 접촉에 3명의 실무대표를 보낼 것을 알림. |
| <p>1992. 6. 2. 李東馥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남측대변인, 대북성명</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相互 核査察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하루속히 사찰규정 마련에 호응하고, 핵무기開發 疑惑을 해소해야 함. ○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對內外 問題 해결도 쉽지 않을 것임. ○ 또한 북한은 DMZ 무장병력침투 관련, 군정위 회의에 응할 것과 쌍방 당국간 협의가 없는 ‘汎靑學聯’, ‘汎民族大會’추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함.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1. 조선적십자회 대 변인 성명</p> | <p style="text-align: center;">이인모 송환요구 성명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인모에 대한 갖은 박해와 억류는 人道主義에 배치되는 행위로 이 를 峻烈히 糾彈함. ○ 남조선 적십자사와 당국은 병고에 시달리는 이인모를 북한으로 無 條件 送還할 것을 요구함. |
| <p>1992. 6. 2. 적십자회 중앙위 원회 위원장 대 리 리성호, 대남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 修正提議,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과 관련,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위 해 1992. 6. 5. 10:00 우리측 대표 3명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 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임을 알림. |
| <p>1992. 6. 3. 최고인민회의 부 의장 여연구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3차 토론회 관련, 이우정, 이호재, 윤정옥에게 보낸 전통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 3차 토론회와 관련한 선생들의 4월 13일 편지를 받았음. ○ 귀측과 일본측이 토론회 날짜를 9월초로 연기하자고 제기해 온 데 동의하며, 討論議題를 ‘民族 大團結과 女性の 役割’, ‘日本의 朝鮮 侵略과 支配, 戰後 報償問題’, ‘平和 創造와 女性の 役割’로 하지는 데 다른 의견이 없음. ○ 討論會 준비와 관련하여 남은 일은 토론회의 날짜 확정과 대표단 인원수,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겠는가 하는 問題라고 봄. 이 와 관련하여 적당한 시기에 北南 女性代表들이 판문점에서 협의하 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5. 南北赤十字 實務 代表 接觸 제 1 차(판문점 증감 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방문단중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방문 희망자 명단을 訪問團 規模의 2배수인 200명으로 하여 100명을 다 찾아 주도록함. ○ 예술단, 기자, 지원인원 중에서도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함. ○相逢은 合同相逢이나 個別相逢뿐만 아니라 합숙, 동행 등을 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평양의 인근 지역인 경우 家庭訪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4. 정무원총리 연형 묵, 대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鄭元植 國務總理 核査察會談 誠意促求에 대한 對南電通文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은 '核統制共同委'에서 합의사항을 어기고 非核化共同宣言 이행 관련 부속합의서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찰규정에 美國의 核武器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獨立項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합의 사항에도 없는 특별사찰과 同數査察, 軍事基地査察까지 들고나와 問題妥結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음. ○ 귀측이 최근 美國·日本까지 끌어들이 핵소동을 일으키며 T/S 합동군사연습도 재개하겠다고 하고, 南北對話도 再點檢하겠다고 하며, 민간급에서 하는 汎民族大會와 범청학련 결성사업도 시비해 나서고, 南北合意書 이행도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귀측은 우리와 美國·日本 과의 관계개선에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를 악화시켜 나라의 情勢를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 내부의 불안한 사태를 수습하려 하거나, 앞으로 選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보려는 불순한 전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함. ○ 귀측이 核統制共同委 會議가 결렬되었다고 헛소문을 퍼고 남북합의서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 조건에서 8·15 노부도방문단 교환사업의 전도를 흐리게 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음. ○ 귀측은 부속합의서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들에 진정 和解와 協力, 통일을 위한 성실한 입장과 자세로 임해야 하며 6월 16일에 핵통제공동위 제 6차 회의 開催提議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임. | | |
| <p>1992. 6. 5. 북남적십자 실무 대표 접촉 제 1 차(판문점 중감 위원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規模에서 기지단을 40명, 지원인원을 30명으로 하고, 이산가족의 名單交換은 1차에 100명으로 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0명의 명단을 通報토록함. ○ 방문 대상자 중에 상대측 지역에서 人命被害,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자는 제외하며, 명단 통보 樣式에는 갈라지기 직전의 職場 및 職位를 밝히도록함. ○ 예술단 공연과 관련, 공연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를 시내에 붙 | |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6. 9.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5차 회의(판문점 평화의 집)</p> | <p>問,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함.</p> <p>남북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단 명칭 :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 방문단 규모 : 인솔책임자 1명, 노부모 방문단 100명, 예술단 7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40명(총 241명) - 방문단 구성 : 노부모방문단은 50세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선발 구성 - 방문단 교환 방법 : 同時交換 訪問 - 방문단 교환 시기 : 1992. 8. 18. ~ 8. 21. (3박 4일) - 訪問地 : 서울, 평양 - 이산가족 相逢範圍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가족우선, 친척의 경우 傍系 8촌, 外家 4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밖의 친척 포함. - 공연횟수 : 2회 - 공연내용 : 노래와 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刺戟하지 않는 내용, 사회자는 公演種目만 紹介 - 공연 내용 중계 : TV, 라디오로 실황 중계 - 공연 시간 : 120분 정도 - 取材活動 : 취재활동 보장 및 취재에 필요한 제반 便宜 提供 - 기타 : 절차에 관한 사항 <p>○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7. 12.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참석 대표 : 이병용, 이준구, 이정용</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4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기본취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합의서 전문의 '特殊關係'는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관계 이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형성되는 2중의 관계임.(제 1장 총칙)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9.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 5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이고 관람자에게도 배포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訪問團 名稱 :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 訪問團 規模 : 노부모 방문단 100명, 예술단 70명, 기자 40명, 보장성원 30명등 총 240명, (* 단장 : 적십자 단체 부 책임자급 1명 포함) ○ 방문단 구성 : 노부모방문단성원은 50세이상의 北과 南에 故鄉을 둔 사람. ○ 방문단 교환 방법 : 同時交換 訪問 ○ 방문단 교환시기 : 1992. 8. 25. ~ 8. 28. (3박 4일) ○ 방문지 : 평양 서울 ○ 이산가족 상봉범위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친척의 경우 傍系 8촌, 처·외권 4촌, 그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 ○ 공연회수 : 4회 ○ 공연내용 : 노래 춤으로 함. 공연내용은 민족적이고 건전하며 상대측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 ○ 公演時間 : 1시간 30분 ~ 2시간 ○ 취재활동 : 비방·중상을 금하고, 民族的 和解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原則으로함. ○ 기타 : 절차에 관한 사항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7. 12.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실 ○ 參席 代表 : 박영수, 김광수, 신원철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발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부속합의서 안은 '特殊關係'를 2중적 관계로 규정하는 등 現狀固着과 分裂志向的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 우리를 反國家團體로 규정한 國家保安法 등 화해에 저촉되는 법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노정하고 있으며,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12. 南北赤十字 實務 代表 接觸 제 2 차(판문점 중감 위원회의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의 범실태 조사 및 문제점 협의를 위해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法律實務協議會를 設置·運營提議(제 2장) -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誹謗·中傷中止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의(제 16조) - 반드시 금지해야할 破壞·顛覆行爲의 기본적 유형을 구체화, 자기측, 상대측, 제 3국을 막론하고 파괴·전복하기 위한 단체의 조직·결성·지원·조장 등을 금지(제 4장) - 군사정전협정의 대체방안 강구, 현정전상태를 평화로 전환시까지 군사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3개항의 조치 제안(제 5장) - 국제무대에서 상호 誹謗·中傷中止, 남북 해외 공판간 협의창구 개설,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에서의 協力方案,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등 규정(제 6장) ○ 4차 회의시 북측이 提示한 부속합의서(수정안)는 구체적 履行對策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며, 기본합의서 協商過程에서 제외키로한 用語가 들어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前提條件의 설정과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한 부분이 있음. ○ 비무장지대 북측 무장병력 침투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軍事停戰委員會 會議 소집에 호응해 와야함. ○ 次期會議 일시 및 장소 : 1992. 7. 2. 10: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이동복(공동위원장), 민병석(이하 위원), 김달술, 최규학, 강근택, 신광옥, 신 정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特定人의 送還問題 등 會談外的인 문제를 거론치 말아야함. | | |

| 北 | 韓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12. 북남적십자 실무 대표접촉 제 2차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전환문제에서 ‘當事者 解決原則’을 들고나와 미군의 계속 주둔을 기도하는 등 外勢依存的 立場과 기반을 高수하고 있음. ○ 남측은 “核問題가 풀리지 않으면 南北關係의 실질적인 進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公언하며 “누구에 대한 制裁니,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니 하고 소동을 벌려, - 우리에게 대한 國際核査察 結果를 희석시키고, 우리의 對美·日 關係 개선에 제동을 걸어 불안한 國內情勢를 수습해보려하고 있음. - 이와 같이 北南和解·協力에 인위적 難關을 조성하면 모처럼 마련한 노부모 방문단 교환에 위험을 빠뜨릴 우려가 있음. <p>○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7. 2. 10:00, 판문점 통일각</p> <p>○ 參席代表 : 백남준(공동위원장), 김완수(이하 위원), 조상호, 최성익, 정영춘, 심태진, 조성대</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이 핵문제를 가지고 벌리고 있는 對決騷動에 대해 귀적십자가 適當한 注意를 돌려 해당하는 措置를 취해 줄 것을 지난번 접촉에서 강조했음에도, 그 후의 사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이것으로 하여 방문단 교환사업에 엄중한 難關이 조성되어 있음. ○ 이인모 문제는 雙方 赤十字團體가 우선 관심을 두고 해결할 가장 절박한 人道主義 問題임. 報道에 의하면 貴當局이 이인모를 노부모 |

| 出 處 | 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6. 14.(현 지시간 1992. 6. 13.) 鄭元植 국무총 리, 리우 데 자 네이루 유엔環境 開發會議 基調演 說</p> <p>1992. 6. 16~17. 기계화를 위한 한글 로마자 표 기법에 관한 제 5차 남북회의 (프랑스 파리)</p> | <p style="text-align: center;">방문단 교환관련 주요 합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솔책임자 : 적십자 부총재 - 방문기간 : 1992. 8. 25.~8. 28.(3박 4일) - 공연내용 :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 - 공연 프로그램 교환 : 방문 5일전 교환하되 별도의 協議節次 불 필요 - 公演 實況 中繼 - 방문자 표지 :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 삭제(* 북측안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6. 22.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 참석대표 : 이병웅, 이준구, 이정용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에 DMZ 生態系 調查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분단으로 지난 40여년간 人跡이 끊긴 길이 258km, 폭 4km의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溫帶性 生物相이 자연 그대로 유지돼 있는 지구상 유례가 없는 지역임. ○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生態系調查를 實施할 것을 提議함. <p style="text-align: center;">한글 로마자 표기 단일안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子音은 北側案, 母音은 南側案을 각기 受容한 折衷案에 합의 하여 國際標準化機構(ISO)에 단일안으로 公式提出(1992. 6. 17.)함. ○ 회의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남북 양측에 한글 로마자 표기 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 1987년 5월 모스크바에서 첫회의 개최 이후 4차의 회의 개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16~17. 機械化를 위한 조선어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제 5차 北南會議 (프랑스 파리)</p> | <p>방문단 교환에 앞서 北半部로 돌려 보내기로 積極檢討 하고 있다 고 했는데 이인모를 언제 어떻게 송환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討議 할 것을 제의함.</p> <p>방문단 교환관련 주요 합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引率責任者 : 적십자 부위원장급 - 방문기간 : 1992. 8. 25.~8. 28. (3박 4일) - 公演內容 :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않는 것으로 - 공연 프로그램 교환 : 방문 5일전에 교환하되, 別途의 協議節次 불필요 - 공연 실황 중계 - 방문자 표지 : 관련대로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접촉 일시 및 장소 : 1992. 6. 22.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參席代表 : 박영수, 김광수, 신원철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어 로마자표기 단일안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子音은 北側案, 母音은 南側案을 각기 수용한 折衷案에 합의하여 國際標準化機構(ISO)에 단일안으로 公式提出(1992. 6. 17.)함. ○ 會議經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11월 國際標準化機構에서 북남 양측에 조선어로마자표기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1987년 5월 모스크바에서 첫회의 개최 이후 4차의 회의 개최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19.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5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 style="text-align: center;">○ 참석대표 : 정수용(단장, 공업진흥청 차장)외 4명</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本委員會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北側은 武裝兵力浸透挑發事件의 진상규명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에 호응해 나와야 하며, 國際原子力機構의 북측 핵시설 사찰 결과에 따른 內外疑惑을 해소시키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p> <p>○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한 共通認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는 불가침 이행·준수를 위한 별도의 附隨的인 規程이나 우선적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남북의 軍事的 現實狀況을 토대로 작성 되어야 하며, 쌍방이 공평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함.</p> <p>○ 4차회의시 제시한 北側 附屬合意書 修正案 중에 명칭은 기본합의서의 具體的對策을 담아야 하는 부속합의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본합의서 每條項은 反復記述, 細項만 添加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適用範圍를 구속하고 있음.</p> <p>○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안은 條文別, 條文間 不可侵 精神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장 22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침관련 諸般 措置事項들의 협의·추진에 필요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위해 用語의 정의(제 1장 제 1조)를 하였고,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강조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및 侵略行爲를 억제하는 國際的 保障 장치의 중요성을 전제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과 국제협약과의 관계(제 1장 제 3조)를 設定 하였음. - 우발적 무력충돌의 예방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南北軍事直通電話 설치·운영(제 5장)조항을 설정, 부속합의서 작성과 동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함. <p>○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7. 16. 10:00, 판문점 평화의집</p> <p>○ 參席代表 : 박용욱(공동위원장), 김희상(이하위원), 임태순, 이영호, 김영진, 조상호, 채준석</p> | | |

| 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19.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판문점 통일각)</p> | <p>○ 參席代表 : 홍인택(단장, 규격위원회 위원장)외 2명</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 남측이 4차회의시 제시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은, 포괄적인 부속합의서안이라는 데 評價할 수 있으나, 내용면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침 이행에 관한 本質的 對策을 회피하거나, 명백하게 담지 못했고, 불필요한 '用語定義'와 우발적 武力衝突防止에 관련한 대책들만 나열함. 2. 不可侵의 이행대책을 민족주체성의 見地에서 세워 나가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 3. 構成體系와 내용체계가 복잡하고 散漫함. <p>○ 남측 부속합의서의 문제점들이 단순한 實務記述的 錯誤가 아니라, 美國에 追從하여 불가침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무엇을 얻으려는 不純한 企圖로부터 출발하고 있음.</p> <p>○ 4차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에 '章'제목을 달고, 條項別 配列을 조정한 修正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장(武力 不使用) : 제 1 조~제 6 조 - 제 2 장(紛爭의 平和的 解決) : 제 7 조~제 11 조 - 제 3 장(不可侵 境界線) : 제 12 조~제 15 조 - 제 4 장(北南軍事共同委員會) : 제 16 조 - 제 5 장(軍事直通電話 設置·運營) : 제 17 조~제 20 조 - 제 6 장(修正 및 發效) : 제 21 조~제 22 조 <p>○ 남측은 제 2의 핵소동을 벌여놓고 핵문제를 南北關係 改善의 전제 조건화 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훈련을 再開하려는 美國에 발 맞추어 南北關係 發展을 原點으로 돌려 세우려 하고 있음.</p> <p>○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7. 16. 10:00 판문점 평화의집</p> <p>○ 參席代表 : 김영철(공동위원장), 박응수(이하위원), 박성진, 리길청, 김민현, 박림수, 원동연</p> | |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20. 孔魯明 남북핵통 제 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대 북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차 회의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 하였음에도 相互査察規程을 채택하지 못하고 時限을 넘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 이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 6월 1일 國務總理 電話通知文을 통해 남 북 상호사찰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 귀측은 상호사찰이 이루어 지 않는한 南北關係의 實質的 進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하고, 성실한 자세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해 오도록 촉구 한 바 있음. ○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1992. 6. 30. 10:00,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차 회의를 가질 것을 제 의하는 바임. | | |
| <p>1992. 6. 22. 남북적십자 실무 대표접촉 제 3차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차 접촉시 토의사항과 北側提示 合意事項을 감안하여 작성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 修正案 提示. ○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하자는 것이며, 實務接觸과 無關한 문제로 障礙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무대표로 서 基本任務에 忠實하여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함. ○ 참석대표 : 이병웅, 이준구, 이정용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20. 정무원 총리 연 형목, 대남전통 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 書信 發送을 위한 連絡員 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鄭元植 國務總理에게 보내는 書信을 傳達하기 위해 1992. 6. 22., 15: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2명의 連絡員을 파견할 계획임. 귀 측도 이에 相應한 措置를 취해주길 바람. |
| <p>1992. 6. 22. 북남적십자 실무 대표접촉 제 3차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측 民自黨의 6월 2일 黨政會議에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은 核査察問題가 해결되지 않는한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제외한 모든 합의사항을 留保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露骨的인 挑戰行爲임. ○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쌍방적십자의 發起가 아니라,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合意事項中 하나인데 다른 모든 사항을 留保하면서, 노부모방문단교환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갈지도 않은 詭辯이며, 남측이 訪問團 交換事業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임. ○ 노부모방문단교환 實務節次問題의 논의에 앞서 다음 접촉에서 핵문제와 남북간 合意書 履行問題를 결부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남측당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急先務이고, 방문단 實現展望이 없는 실정에서 實務問題를 협의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愚弄하는 것임. ○ 차기접촉 일자는 南側當局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없는한 實務代表接觸은 無意味하며, 남측당국의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前提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次期接觸 日字를 통보하기 바람. ○ 참석대표 : 박영수, 김광수, 신원철 |

■ 1992年 6月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 出 處 | 北 韓 提 議 內 容 |
|---|--|
| <p>1992. 6. 22. 정무원 총리 연 형목, 鄭元植 국 무총리에게 서한 (*연락관 접촉 을 통해 접수)</p> | <p style="text-align: center;">乙巳·丁未條約 偽造관련 共同對處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乙巳 5條約', '丁未 7條約'이 법적효력이 없는 偽造文書임이 資料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 북과 남 당국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거래와 歷史 앞에 지닌 共同責任이며 義務임. ○ 우리는 이 문제를 南北高位級會談 交流·協力分科委員會에서 긴급 의제로 토의하고 共同決議文 같은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共同決意文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과 北은 일본당국으로부터 과거 日帝가 非法的으로 朝鮮을 침략하고, 植民地 統治를 강요한데 대한 公式謝罪와 보상을 받아내는 문제와, - 現 日本政府가 '을사 5조약', '정미 7조약'의 非法性을 인정하고, 무효화 하는 公式宣言을 발표하며, - 일제의 朝鮮에 대한 不法強占과 관련되는 위조된 歷史記錄들과 모든 不法文書들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應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強力히 要求해야할 것임. |
| <p>1992. 6. 23. 북남핵통제공동 위원회 북측위원 장 최우진, 대남 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南北核統制共同委 會議 開催 關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6차 회의를 6월 30일에 가지는 것이 늦은감이 있으나, 그날 회의장에 나갈 것임. |
| <p>1992. 6. 24. 조선역사학회장 전영률, 대남전 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歷史學者 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歷史學者들과 서울大學 歷史學者들에 의하여 日帝가 強制 締結한 '乙巳 5條約' 등의 條約들이 허위 날조된 것이 라는 證據가 밝혀짐. ○ 북과 남이 민족의 尊嚴과 利益을 위하여 對外關係에서 공동노력할 데 대한 北南合意書가 採擇·發效된 오늘, 우리 歷史家들은 일제가 강요한 '條約'들의 非法性을 밝혀내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先決課題임.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25. 鄭元植 국무총리, 대북서한</p> | <p style="text-align: center;">乙巳·丁未條約 관련 대북서한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乙巳·丁未條約 등 舊韓末에 맺은 모든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며, 이와같은 입장은 1965년 ‘韓日基本條約’ 체결을 통해 일본측에 명백히 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측은 일본에 대해 過去史 清算에 일부 미진한면이 있음을 지적, 兩者間 그 해결을 위해 함께 努力해 오고 있음. ○ 남과 북이 과거 어두웠던 일들을 南北基本合意書 履行·遵守 차원에서 함께 調査·研究 하는 것은 민족동질성을 회복, 일체감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乙巳·丁未條約의 날조 사실규명과 抗日義兵活動·獨立運動 등 우리근대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 교환하고, 이를 共同 調査·研究하기 위해 南北歷史學者間 學術會議를 개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24. 軍縮平和研究所 고문 이삼로 ‘한 반도의 평화통일 에 관한 6개국 회의’에서 기조 연설(하와이 호 놀룰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입장에서 貴研究會에 과거 일제의 侵略罪行을 공동으로 재 확인하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가지고 ‘北南 歷史學者 會談’을 가질 것을 提議함. ○ 이를 위해 7월 중순 관문점 증감위원회의실에서 實務接觸을 갖고, 北 南歷史學者會談 개최일자·장소·참가인원·討議案件 등 實務的問 題들을 협의했으면 함.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對話關聯 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의 통일과 南北對話를 촉진시키기 위해 美國과 日本이 한 국 일변도의 정책을 고치는 것이 중요함. 南北對話가 진전되지 않 으면 朝美關係, 朝日關係는 改善되지 않는다는 思考方式은 韓·美 ·日 3국의 對北壓力을 일방적으로 강화시킬뿐이며, 남북대화와 통 일을 방해하게 됨. ○ 통일전 남북한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통일후에도 존중되지 않으면 안됨.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임. <p>※ 이 회의는 ‘마이니치 신문사’, ‘아시아 調查會’, ‘戰略國際問題研究所 가 共同主催함.</p>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26. 南北交流·協力 分科委員會 제 5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p>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당국은 앞으로 발족될 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남북 학술교류 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주선, 지원할 수 있도록 交流·協力에 관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문제는 남북교류·협력의 信賴性和 責任性を 확보하기 위해 南北 相互間에 合意·運營해야 할 制度的 裝置이며,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문제는 남북화해공동 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문제임. ○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준수 되어야 하며, 現段階에서 쌍방이 중점적으로 할 일은 附屬合意書 作成과 南北相互査察의 실시임. ○ 북측의 핵문제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實質的 進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하게 될것임. 이 산가족방문단 교환은 핵문제 등 다른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無條件 推進해야함. ○ 日帝의 乙巳·丁未條約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로 확인 한 바 있으므로 南北共同對處는 불필요하며, 다만 새로 발굴된 자료교 환과 關係學者들의 共同調査·研究를 위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26.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p> | <p style="text-align: center;">美 核武器·核基地 全面査察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앞으로 IAEA의 사찰을 誠勤히 받을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핵시설의 의심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機構를 통해 우리의 平和的 核政策의 眞實性을 보여줄 것임. ○ 우리나라 핵위협은 南朝鮮에 배비된 美國의 核武器로 인한 것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北南査察을 통해 美 核武器·核基地에 대한 全面査察이 進行되어야 함. ○ 남조선 당국은 이미 합의한 대로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합의서 초안을 빨리 제기하고, 核武器·核基地에 대한 全面査察을 실현할 수 있도록 北南査察規定을 채택하는데 응해 나서야함. |
| <p>1992. 6. 26. 북남협력, 교류 분과위원회 제 5 차 회의(판문점 평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側의 黨政會議와 李東馥 北南高位級會談 南側代辭人의 언동은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交流, 協力分科委員會 事業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이는 남측이 북남합의서의 전반적 이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얼마나 執拗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노부모방문단교환은 남측이 합의사항 이행을 차단시켜 北南關係가 惡化되면 실현될 수 없으며, 政略的 目的으로 방문단교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중히 대하지 않을 수 없음. ○ 日本이 歪曲 날조한 죄악에 찬 조선침략사에 共同對處하는 문제를 緊急議題로 토의할 것을 제의하며, 만약 이 問題解決을 회피, 경원시하면 民族史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외세에 아부하고 빌붙는 事大根性에 포로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임. |

| 南 | |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 <p>1992. 6. 29. 이병웅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대북전통문</p> | <p>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이를 주선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작성을 7월중에 끝내어 共同委員會가 속히 가동 되도록 노력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次期會議 일시 및 장소 : 1992. 7. 28. 10:00.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임동원(공동위원장), 김인호, 송영대, 박운서, 유득환, 신현웅, 박수창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日字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8월 25일부터 8월 28일 사이 교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訪問團交換에 따른 원만한 준비를 위해 오는 7월 15일경까지는 합의서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견지에서 제 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7월 3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 | |
| <p>1992. 6. 3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6차 회의(판문점 평화의 집)</p> |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發言 要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의 1차 임시사찰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 핵재처리시설 건설 등 北側의 核武器 開發計劃 推進 事實이 확인됨으로써, 世界의 疑感이 더욱 增幅 되었음. ○ 북측이 지난 6년간 5MW급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생성된 '使用後 核燃料'의 量과 처리내용이 명확치 않고, IAEA에 제출했던 최초 보고서에 동위원소처리시설, 이산화우라늄생산시설을 누락시킨 사실에서 볼 때 또다른 미신고 隱匿施設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南北 核査察이 필요함. ○ 상호사찰규정의 필수적 기본요소로는 사찰대상에 있어서 對稱性과 포괄성이 보장되는 相互主義의 遵守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상대측이 選定하는 장소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는 特別査察 制度가 필수적임. ○ 북측은 核再處理 施設의 건설은 즉각 중단·폐기 하겠다는 것을 對外的으로 宣稱해야하며, 대규모 재처리 시험시설과 플루토늄 추 | |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30. 북남핵통제공동 위원회 제 6차 회의(판문점 평 화의집)</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발언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7. 28.,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김정우(공동위원장), 김채성, 손종철, 김이순, 류창석, 정덕기, 김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은 IAEA 사찰로 核武器 開發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없어 졌으므로, 貴側地域의 美國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 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核心的 問題이며, 北南 査察의 基本이 됨. ○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남합의서 이행에 계속 人爲的 制動을 걸어 北 南關係를 對決의 原點으로 몰아간다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며,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交換事業도 유산될 수 있음. ○ 남측은 履行合意書 草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며,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 討議順序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에 規定되어 있는 順序에 따라 할 것을 제의함. ○ 사찰규정 구성체계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 2조 2항부터 7항까지 每個 項을 독립 '章'으로 사찰규정을 만드 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제 3차 회의시 제시한 사찰규정(초안)을 이 틀에 맞추어 再構成 |

| 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 <p>출 은너 가능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핵재처리시설이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廢棄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次期會議 일시 및 장소 : 1992. 7. 21. 판문점 통일각 ○ 參席代表 : 공로명(공동위원장), 반기문(공동부위원장), 정대규(이하 위원), 변종규, 이부직, 이승구, 홍승길 |

| 北 韓 | |
|---|---|
| 出 處 | 提 議 內 容 |
| <p>1992. 6. 30. 汎民聯'북측본부 의장 윤기복, 대 남전통문</p> | <p style="text-align: center;">한 修正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1992. 7. 21. 판문점 통일각 ○ 참석대표 : 최우진(공동위원장), 박광원(공동부위원장), 김경춘, 장장천, 김수길, 최영관, 김만길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聯 北側代表團 板門店 通過節次 協議위해 實務接觸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제 3차 汎民族大會와 제 2차 靑年學生統一大祝典이 진행되게됨. ○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의 판문점 通過節次를 협의하기위해 7월 3일 실무일꾼을 내보내니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바람. |

事項索引

ㄱ

- 建國大 國語國文學科 學生會 / 48, 50
- 件別合意, 即刻實踐 / 116, 158
- 經濟相談所 / 135, 168
- 高齡離散家族 故鄉訪問團 / 130
- 共同發表文 / 62, 78, 114, 156
- 光復節 慶祝行事共同開催 / 22
- 交流·協力分科委員長 接觸 / 148
- 教育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 13
- 교토통신사 / 13
- 國家保安法 / 143
- 國家保安法 撤廢 / 17, 35
- 국제기구협조총국장 / 93
- 국토순례대행진 / 6
- 국토종단대행진 / 26
- 軍事分科委員長 接觸 / 148
- 軍縮平和研究所 / 189
- 權皓景 / 94
- 均衡推進原則 / 142
- 김일성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 53
- 김일성종합대 조선어문학부 / 49, 51

ㄴ

- 南北間 核·軍事問題 / 40
-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교체 / 100, 108
-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 / 28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 90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2 차 대표접촉 / 90
- 남북고위급회담 分科委員會 構成·運營問題 協議를 위한 제 3 차 대표접촉 / 94
- 남북공동발표문 / 82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접촉 명단 / 118, 119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 116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제 1 차 위원접촉 / 118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제 2 차 위원접촉 / 124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제 3 차 위원접촉 / 126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2 차 회의 / 128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 3 차 회의 / 134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3 차 회의 제 1 차 委員接觸 / 136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4 차 회의 / 168
-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 5 차 회의 / 190
- 南北教授·學生交流 提議 / 18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 112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2 차 회의 / 122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3 차 회의 / 138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4 차 회의 / 164

- 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 5 차 회의 /182
- 남북노동자 대표접촉 제의 /7
- 남북농민대표 접촉 촉구 /9
- 南北民間交流推進 機構 /30
- 南北法律共同委 /134
- 남북佛敎徒 合同會議 /62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74
- 南北相互核査察 促求 /172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110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1 차 위원접촉 /138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2 차 회의 /120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3 차 회의 /132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4 차 회의 /158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 5 차 회의 /176
-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48
-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 /176
-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42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제 1 차 /174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제 2 차 /180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 3 차 /184
- 南北學生會談 /19
- 남북한 元老會談 제의 /20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1 차 회의 /118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2 차 회의 /122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3 차 회의 /130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4 차 회의 /150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4 차 회의 제 1 차 위원접촉 /156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4 차 회의 제 2 차 위원접촉 /162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4 차 회의 제 3 차 위원접촉 /162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5 차 회의 /162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6 차 회의 /192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 차 회의 개최제 /18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10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2 차 대표접촉 /10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3 차 대표접촉 /10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4 차 대표접촉 /106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5 차 대표접촉 /108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6 차 대표접촉 /112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 7 차 대표접촉 /112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인원 명단 /116, 117
- 南北和解共同委員會 /146
- 남조선의 정치인·학자·언론인 /13
- 노부모방문단 /145
- 노부모방문단 교환관련 적십자 實務代表接觸 /172
- 盧泰愚 大統領 /22, 64, 73
- 盧泰愚 大統領 제46차 유엔총회연설 /50
-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9

ㄷ

- 當局承認 /190, 168
- 當事者 解決原則 /138, 17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34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135
-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54, 140
- 豆滿江地域 開發을 위한 서울會議 /93
-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북측대표단 참가 관련 실무접촉 /98
- DMZ 生態系 調査 /180

ㄹ

- 武力不使用 /112
- 문익환 /35
- 美 核武器 · 核基地 全面査察 /191
- 民族大團結의 原則 /142
- 民族文化共同委員會 /24
- 民族의 大祝典 /36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29, 55

ㅂ

-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대회 /34
- 訪北拘束者 慰問團 /30, 31, 35
- 汎民聯 南側本部結成準備委員會 /22
- 汎民聯 北側本部 代表團 /23
- 汎民族大會 /29, 33
- 汎民族大會 제 2 차 準備會談 /21
- 汎民族 哲學者大會 /37, 45

-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13, 39
- 法的 · 制度的 裝置撤廢 /134, 190
- 베를린 3자회담 /5
- 北南 歷史學者會談 提議 /187
- 北南 · 海外青年學生統一大祝典과 汎青學聯 結成 /135
- 北側代表團 皮膚炎 發生 /153
- 북측 무장병력침투 /166
-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141
- 北韓地域 學術踏査 /49
- 分科委員會 人員 名單 /108, 109
- 분쟁의 평화적 해결 /112
-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초안) /57

- 不可侵宣言 /42
- 不可侵 合意書 /42
- 非核化 宣言 /73

ㅅ

- 使用後 核燃料 /192
- 사찰규정 마련 시한 明示問題 /112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소장 /45
- 3通 合意書 /42
- 相互 同數査察 /151
- 서울지역 大學新聞記者 /44
- 實踐性 保障原則 /140

ㅇ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64, 65, 66, 67, 71, 127, 128, 173

- IOC위원장배 탁구대회 /34
- 연형목 정무원총리 유엔연설 /53
- 예술단 /145
- 「5월 광주 성지 순례단」 /153, 154
- 외무부 대변인 성명 /40
- 柔道選手 이창수 /65
- 유엔가입 /11
- 유엔環境開發會議 /180
- 乙巳5條約 /187
- 疑心同時解消 原則 /132, 151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170
- 이삼로 /189
- 이인모 송환요구 /173
- 이인모 문제 /179
- 履行合意書 /167
- 人共旗 團東 /161
- 人共旗 事件 /160
- 임수경 /35
- 一括合意, 同時實踐 /143, 158
- 一括討議와 順次討議 /163

ㄨ

- 資料交換室 設置問題 /135, 168
- 自主의 原則 /142
- 전대협 /6
- 全民族 政治協商會議 /144
- 定期査察 /166
- 丁未 7條約 /187

- 政治分科委員長 接觸 /146
- 제 4 차 고위급회담 개최 제의 /4, 23
-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 차 실무대표접촉 /42
-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2 차 실무대표접촉 /42
-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 차 실무대표접촉 /46
-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 /5, 23
-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 /54
-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66
-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2 차 대표접촉 /68
-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3 차 대표접촉 /68
-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 4 차 대표접촉 /72
-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72
- 제 6 차 南北高位級會談 /102
- 제 7 차 南北高位級會談 /142
- 제 4 차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會議 /150
-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4
- 제 7 차 77그룹 亞洲地域閣僚會議 /46
-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우승컵 인수 /140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21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33
- 조·미 관계개선 /15
-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위원장 /39
-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93, 95

-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73, 81
-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43
- 조선역사학회장 /187
- 조선직업총동맹 /7
- 조선학생위원회 /11, 19, 35, 53, 153
- 조용술 /5
- 主體思想 /47
- 중국오픈탁구대회 /34

天

- 窗口一元化 /143
- 청년학생통일대축전 /6
- 靑少年學生 慰問團 /39
- 逐條討議 /160
- 7·4 共同聲明 /142
- 77그룹 아주지역 각료회의 /48

ㄱ

- KNCC /93, 94
- KNCC, 조선기독교연맹 대표접촉 /100
- KNCC總會 參加 保留 /103
- 코리아축구단일팀 서울평가전 /8
- 코리아축구팀 평양해단식 /14
- 콩크리트 장벽 /15

ㅅ

- 통일관계장관회의 /17
- 통일기원제 /26

- 통일대축전 /11
- 統一大行進 /26, 30, 44
- 統一大行進 準備會議 /32
- 통일문제 대토론회 /26, 46
- 통일문화축전 /26
- 統一院 交流協力局長 /52
- 통일원 대변인 /16, 28, 30
- 特別查察 /150, 166
- 特殊關係 /177
- 팀스피리트 /4

ㅈ

- 8·15 경축행사 준비회의 /40
- 8·15慶祝 共同行事 推進 /28, 34
- 8·15 汎民族大會 /39
- 平壤 開催 동북아 경제포럼 /134
- 平和의 原則 /142
- 平和統一 3個 實踐方案 /50

ㅇ

- 韓國大學教育協會長 /18
- 한글 로마자 표기 단일안 /180
- 한민족 철학자대회 /37, 40, 45
- 韓半島 非核地帶化 宣言 提議 /37
-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 /57
- 韓半島의 非核化 宣言 /64
- 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안) /80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82, 88

- Hans Blix / 162
- 韓日基本條約 / 188
- 핵문제 관련 대남서한 / 115
- 核問題 협의를 위한 제 1 차 대표접촉 / 80
- 核問題 협의를 위한 제 2 차 대표접촉 / 80
- 核問題 협의를 위한 제 3 차 대표접촉 / 82
- 核査察 會談 誠意 促求 / 170
- 核査察 會談 誠意 促求에 대한 對南電
通文 / 175
- 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 · 運營에 관한
合意書 / 106
- 行事準備委員會 / 26
- 화해, 불가침과 교류 · 협력에 관한 합
의서 / 56
- 吸收統一 / 17

南北韓統一對話提議比較
第 3 卷
1991. 4 ~ 1992. 6

발행처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산3-25, ☎ 739-3846)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인쇄일 1992년 8월 25일

발행일 1992년 8월 31일

◀비매품▶

